‘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 **일시** 2026년 7월 16일 (목) 14:00

◆ **장소** 대검찰청 별관(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NDFC) 2층 베리타스홀

◆ **주최** 법무부, 법조협회

법무부

법조협회

세부일정 | PROGRAM

시 간	내 용
14:00~14:20	• 등록, 토론회 자료 배부
개회식	
14:20~14:30	• 개회선언, 국민의례 • 법무실장 인사말씀
발표 및 토론	사회: 함태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14:30~15:05	**주제발표:**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연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제2주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15:05~15:40	**주제발표:**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정다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휴식	
[제3주제]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16:00~16:35	**주제발표:**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지정토론:** 이무룡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자유토론·질의응답	
16:35~17:00	• 발제자 및 토론자 • 플로어 질의 등
폐회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목 차

/ 제1주제 /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발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1

– 비물건화 선언을 넘어 생명성·감응력 기반의 법적 지위 정립으로 –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33

| **이연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43

/ 제2주제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발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 ····· 49

|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정다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75

|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 81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목 차

/ 제3주제 /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발표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 ····· 93

|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토론 | **이무룡**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111

| **황성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119

제1주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비물건화 선언을 넘어 생명성·감응력 기반의 법적 지위 정립으로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비물건화 선언을 넘어 생명성·감응력 기반의 법적 지위 정립으로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국문요약

동물 관련 법제는 우리 사회의 동물 인식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하지 않으며, 동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체물로서 물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그 결과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유권, 점유, 반환, 손해배상 등 재산법적 틀 안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반려동물의 상해 ·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이혼 · 사실혼 해소 시 반려동물의 귀속, 강제집행과 압류,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구조동물의 보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분쟁에서 드러난다. 최근 판례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손해배상 영역에서는 반려동물의 시장가치만으로 손해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형사 영역에서는 동물의 고통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이, 반려동물 귀속 분쟁에서는 동물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취득 · 양육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그러나 동물의 복리나 주된 돌봄관계는 아직 독자적 판단 기준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고, 법적 보호는 여전히 보호자의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표적 입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었다. 이 부정형 선언은 동물을 일반 재산적 객체와 구별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지만,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물건화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의 소극적 비물건화형 규정이 이러한 한계를 공유하는 반면, 프랑스 · 스페인 · 퀘벡 등은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는 적극형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이 글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정형 선언을 넘어 생명성과 감응력에 기초한 적극형 규정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 · 관리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산적 귀속, 보호 · 관리 책임, 등록상 책임, 사육자 적격성을 구별하여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에 동물의 적극적 지위와 제한적 준용 원칙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귀속 기준의 입법화, 동물등록제의 보호 · 관리 책임 등록제화, 사육금지제와 사육자 적격성 심사체계 마련, 반려동물 손해배상 특칙, 압류 제한, 동물영업 허가갱신제 등 후속 제도를 정비할 것을 검토한다. 또한 분산된 동물 관련 법제를 관통하는 공통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또는 「동물보호법」의 기본법적 개편이 필요함을 논한다. 동물 관련 법제화의 핵심은 비물건화 선언 자체가 아니라, 그 선언 이후 법이 동물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있다.

주제어 : 동물의 법적 지위, 비물건화, 생명성, 감응력, 반려동물 귀속, 사육금지제, 보호 · 관리 책임, 동물복지기본법

Ⅰ 문제의 제기

동물 관련 법제는 우리 사회의 동물 인식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다. 과거 동물 관련 법제는 주로 축산 진흥, 질병 관리, 공중위생, 야생생물 보전, 소유자 책임, 동물학대 방지 등 개별 행정목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관리의 대상이나 재산적 객체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확대, 개식용 종식 입법, 동물영업 규제 강화, 실험동물 윤리 및 전시동물 복지 논의 등은 동물이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법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상 동물의 지위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체물'로서 물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생명이 있고, 고통·공포·스트레스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인간과 지속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단순히 소유권, 점유, 반환, 처분, 손해배상이라는 재산법적 틀 안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는 여러 구체적 분쟁에서 드러난다.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을 시장가치나 교환가치만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반려동물을 누가 계속 돌보아야 하는지,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학대·방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동물 사육을 허용할 수 있는지, 불법 번식장이나 동물영업장에서 구조된 동물의 보호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개식용 종식 이후 기존 영업자의 전환지원과 동물 보호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이들 쟁점은 모두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한 법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물의 생명성과 감응력을 고려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최근, 반려동물 귀속 관련 하급심 판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반려견 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반려견을 분양받았는지, 분양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사실혼 성립 전 취득한 것인지,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1] 교제관계 종료 후 공동으로 기르던 강아지들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등록 명의나 일방의 비용 부담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취득·양육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았다.[2]

이러한 판례 흐름은 동물등록제도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공시하거나 확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행정상 관리제도이다. 따라서 동물등록 명의는 민사상 소유권 판단의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오히려 동물등록제는 소유권 공시제도라기보다,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자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가 보여주는 한계도 분명하다. 법원은 동물등록 명의라는 형식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귀속 분쟁을 유체동산 인도청구, 특유재산, 소유권 귀속, 점유 권원 문제로 파악하였다. 즉, 반려동물의 복리, 주된 돌봄자, 사육환경, 건강상태, 보호자와 동물의 생활관계, 학대·방임 여부 등은 독자적인 판단 기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과 유사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현행 법제는 이를 재산법적 기준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논의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 물건의 소유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동물은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이므로, 소유자 또는 사육자가 동물을 임의로 방치·유기·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사육금지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대·방임·유기 등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보호·관리할 권한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이다. 즉 사육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소유권 행사가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의 수행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

1) 최근 하급심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반려견 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견의 취득 경위, 분양대금 부담, 사실혼 성립 전 취득 여부,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물등록제도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행정상 관리제도일 뿐, 소유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처음 분양받은 사람의 사실혼 전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동물등록 명의자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195924 판결[유체동산인도].

그동안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표적 입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었다. 이 문안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려는 상징적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만으로는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구조는 실제 법 적용에서 비물건화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쟁점은 단순히 "동물은 물건인가, 아닌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법은 동물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이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동물에 대한 재산적 귀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권리 행사가 생명성·감응력·복지 필요성에 의해 제한되고,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Ⅱ 현행 동물 관련 법제의 구조와 한계

1. 「민법」상 동물의 지위: 재산적 귀속 중심 구조의 한계

현행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3] 동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체물로서 물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동물은 소유권, 점유, 매매, 반환, 손해배상, 강제집행, 상속, 재산분할 등 사법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재산적 객체로 처리된다.

물론, 동물에 대한 재산적 귀속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동물의 분양·입양·매매, 치료비 부담, 손해배상, 반환청구, 보호비용 부담, 영업상 관리 등에서는 여전히 누가 해당 동물에 관한 법률상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지 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의 비물건화가 동물에 대한 모든 사법상 귀속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민법」 체계가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주로 소유권과 점유라는 '재산법적 틀' 안에서 처리한다는 데 있다. 일반 물건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 또는 사육자는 동물을 임의로 방치·유기·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동물은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이므로, 동물에 대한 권한은 단순한 지배·처분권이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된 권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현행 법제의 한계는 동물이 여전히 재산적 객체로만 취급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재산적 귀속, 보호·관리 책임, 등록상 책임, 사육 적격성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사상 소유자가 실제 보호자와 다를 수 있고, 동물등록 명의자가 주된 돌봄자가 아닐 수 있으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학대·방임 이력이 있어 동물을 계속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동물을 물건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핵심은 동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소유권 중심'으로만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생명·안전·복지를 고려한 보호·관리 책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있다.

2. 동물등록제의 성격: 소유권 공시가 아닌 보호·관리 책임 등록

반려동물 관련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제도 중 하나가 동물등록제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관리제도이다.[4] 등록 명의는 동물의 관리책임자와 행정상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도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반려견 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단독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5]. 교제관계 종료

4)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5) 최근 하급심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반려견 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견의 취득 경위, 분양대금 부담, 사실혼 성립 전 취득 여부,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물등록제도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행정상 관리제도일 뿐, 소유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처음 분양받은 사람의 사실혼 전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동물등록 명의자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

후 공동으로 기르던 강아지들의 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등록 명의나 일방의 비용 부담 주장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취득·양육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았다.[6)]

이러한 판단은 동물등록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 동물등록은 부동산등기나 자동차등록과 같은 권리공시제도가 아니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책임 있는 사육을 위한 행정상 관리제도이다. 따라서 등록 명의는 소유권 판단의 하나의 자료일 수는 있지만,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귀속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등록 명의가 소유권 공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사실혼 해소·교제관계 종료·공동입양·임시보호 후 입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귀속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보호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유기·학대·분실·보호비용 부담 등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소유권 공시제도'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관리 책임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등록정보에는 단순한 명의자뿐 아니라 실제 사육지, 주된 보호자, 공동 보호자, 양도·입양·사망·분실 시 변경신고 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 또는 공동양육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등록 명의와 실제 돌봄관계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동물등록제는 소유권의 공시가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의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에 대한 친권'[7)]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권한과 의무가 결합된 보호책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즉,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안전·복지를 고려하여 보호·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3. 「동물보호법」의 발전: 보호·관리 의무와 사육 적격성의 제도화

「동물보호법」은 현재 동물 관련 법제의 중심 법률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며, 동물학대 금지, 적절한 사육·관리,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195924 판결 [유체동산인도]
7)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동물등록, 맹견 관리, 동물보호센터, 동물영업, 교육·홍보 등을 규율한다. 동물의 범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의 의의는 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나 재산적 객체에 그치지 않고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의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8] 동물학대 금지,[9] 동물보호센터 제도,[10] 반려동물영업 규제[11]는 동물에 대한 권한이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정책 방향도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로 이동하고 있다.[12] 사육금지제도 도입,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등록제 확대, 불법영업 관리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의 논의는 사후 처벌 중심의 법제에서 사전 예방과 책임사육 중심의 법제로 전환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육금지제는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사육금지제는 단순히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동물을 보호·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이라는 권한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이다. 동물이 일반 물건이라면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 제한이 문제의 중심이 되겠지만,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면 사육금지는 동물의 생명·안전 보호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관리 적격성 제한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동물학대 금지, 사육·관리 의무, 동물등록, 동물영업 규제,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럼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법체계가 학대행위 금지와 사후 제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대·방임·유기의 사전예방과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

둘째,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의무가 민사상 권리관계,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귀속 판단, 보호비용 부담 문제와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

8)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9)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0)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11)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 영업
12)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참고

셋째, 사육금지제와 같이 동물 사육자의 적격성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과 적용 요건, 절차, 효과는 아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넷째, 반려동물 중심의 규율은 강화되고 있으나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등 다른 영역까지 관통하는 공통 원칙과 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물보호법」은 현행 우리 법제에서 동물 관련 중심 법률로 기능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 사육자 적격성, 분야별 복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상 원칙과 「동물보호법」상 보호·관리 책임 체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의미: 동물복지와 산업 전환의 결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동물 관련 법제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단계적으로 종식하고,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 및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법의 의의는 단순히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동물복지라는 가치가 기존의 영업질서,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지역경제와 충돌할 때[13]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기간, 신고, 이행계획, 지원, 제재를 설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환입법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 필요성을 이유로 기존 산업적 이용관계를 조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존 영업자에 대한 전환지원과 행정상 이행체계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동물 관련 법제가 앞으로 단순한 금지·처벌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보호,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지역경제, 구조동물 보호, 시설 전환, 비용 부담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동물 관련 산업법제는 규제 강화와 전환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

13) 예컨대 개 사육농장,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관련 업계 종사자는 종전 직업을 계속 수행할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사육시설, 도축시설, 영업장, 재고 동물, 설비 등에 투입된 재산적 이해관계도 조정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 관련 업종이 일정한 경제활동을 형성해 온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생계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동물체험업, 불법 번식장 관리 등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14] 동물복지 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을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지만, 기존 영업자를 일거에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태조사, 개선명령, 허가갱신, 영업승계 기준, 폐업·전업 지원, 구조동물 보호체계, 보호비용 부담 기준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5. 분야별 법제의 분산성과 공통 원칙의 부재

동물 관련 법제는 이용 목적과 관리 영역에 따라 분산되어 있다. 반려동물은 주로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수족관 동물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농장동물은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은 인간과 맺는 관계, 이용 목적, 관리 방식, 위험 요소, 산업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 이용관계를 동일하게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복지 원칙이라는 관점에서는 공통 기준이 부족한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은 고통 가능성을 동물 보호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보호 수준은 동물의 생명성과 감응력보다는 인간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동물이라도 반려, 식용, 실험, 전시, 축산, 야생이라는 맥락에 따라 법적 보호의 수준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 목적별 차등 규율 자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공통 원칙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모든 동물 관련 법제는 적어도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 동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불필요한 고통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 동물에 대한 권한은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제 정비는 모든 동물 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성·감응력·고통 가능성이라는 공통 기준을 전제로 하면서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14)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서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과제로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대한 허가갱신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한다.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제한적 준용 원칙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복지기본법(안)」은 보호·관리 책임, 사육 적격성, 분야별 복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Ⅲ 판례를 통해 본 현행 동물법제의 전개와 한계

1. 판례 분석의 의의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동물은 「민법」상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동물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은 사법(私法)관계에서는 재산적 객체로, 공법관계에서는 보호·관리 대상으로, 형사법 영역에서는 학대행위의 객체로 다루어진다.

판례는 이러한 복합적 지위를 잘 보여준다. 민사판례는 동물을 여전히 권리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면서도,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나 치료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형사판례는 동물학대나 잔인한 도살 여부를 판단할 때 동물의 고통, 행위의 필요성, 사회통념, 동물복지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귀속이나 임시보호 동물 반환 사건에서는 여전히 소유권과 점유, 동산 인도청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판례 분석은 동물 관련 법제의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확인하게 한다. 하나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해석론의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가 여전히 재산법적 구조에 묶여 있다는 한계이다.

2. 동물 자체의 법적 지위: 권리주체성 부정과 보호 필요성의 인정

판례에 따르면, 동물 자체가 권리능력을 갖거나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5] 대법원은 반려견의 안락사 사건[16]에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을 고려하더

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례는 현행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동물 자체가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물 자체의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하면서도, 보호자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점은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반드시 동물에게 곧바로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현실적인 입법 방향은 동물을 사람과 같은 권리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사법상·공법상 특별한 고려를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3. 반려동물 손해배상 판례: 교환가치 중심 배상의 한계

반려동물의 상해·사망에 관한 손해배상 판례에서는 기존 물건 관련 법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재산법 관점에서는 동물의 상해나 사망에 따른 손해가 시장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보호자와 장기간 생활하며 형성된 정서적 유대, 치료비 지출, 장례비, 정신적 고통 등이 문제되므로 단순한 교환가치만으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

반려견 진료과정에서의 과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의료과실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 손해를 반려견의 시장 분양가로

15)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16)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피고가 원고 1로부터 위탁받은 애완견 2마리를 유기견으로 오인하여 안락사시킨 이 사건"이라고 정리하면서, 안락사당한 위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 이와 같은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오랜 기간 보호자와 생활하며 정서적 교감을 형성한 생명체인 반려견을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왕치료비 전부와 보호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7]

최근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 반려견의 치료비와 보호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같은 선상에 있다. 법원은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 보호자와 정신적·육체적 교감을 형성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18]

이러한 판례들은 동물을 여전히 민사상 객체로 보면서도,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단순한 교환가치 중심 접근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이 역시 보호자인 사람의 손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동물 자체의 고통이나 이익이 독자적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보호는 보호자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4. 반려동물 귀속·등록·임시보호 판례: 소유권 판단과 돌봄관계의 불일치

반려동물 귀속 분쟁에서는 동물등록 명의, 취득 경위, 분양대금 부담, 실제 양육관계, 소유권 이전 합의 여부 등이 문제된다. 최근, 사실혼 해소 후 반려견 인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견을 처음 분양받은 사람의 혼인 전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대방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19] 법원은 동물등록제도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제도일 뿐, 소유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한 인도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귀속 분쟁에서 등록 명의나 일방의 비용 부담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기 어렵고, 입양계약, 실제 양육관계,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함을 보여준다.[20]

---

17)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18) 이 사건은 판례 원문확인이 어려워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97 최종접속일: 2026.7.1.

19) 이 사건은 판례 원문확인이 어려워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 [유체동산인도]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22 최종접속일: 2026. 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195924 판결 [유체동산인도]

임시보호 동물 반환 사건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임시보호자가 강아지의 복리나 애착관계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행법상 반려견도 소유권의 대상임을 전제로, 소유권자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여 인도 단행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의 복리나 애착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행 민사법 체계에서는 소유권자의 반환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독자적 기준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21)]

이러한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귀속 분쟁이 여전히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유권 확인, 점유 권원, 특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문제로 처리된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게다가 주된 돌봄자, 사육환경, 동물의 건강상태, 학대·방임 이력, 동물의 안정적 생활관계 등은 독자적 판단 기준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 사실혼 해소, 동거관계 종료, 임시보호 종료 등에서 반려동물의 귀속을 정할 때에는 단순한 소유권 귀속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안전과 돌봄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5. 동물학대·도살 판례: 고통, 사회통념, 생명존중 기준의 확장

형사판례에서는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또는 잔인한 도살 여부를 판단할 때 동물의 고통, 공포, 스트레스, 사회통념, 생명존중 정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나타난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도살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해당 방법으로 인해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동물학대 판단이 단순히 행위의 외형이나 업계 관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22)]

이 판례는 특정 도살방법이 다른 동물에 대해 허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동물에게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일한

21)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결정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2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방법이라도 대상 동물의 특성, 그 방법으로 인해 동물이 겪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생명존중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학대 판단에서 행위의 외형이나 기존 관행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 가능성과 생명존중의 관점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훈육·훈련·촬영 등 인간 이용 관행에 대한 통제

최근 판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 관행, 즉 훈육, 훈련, 촬영, 공연 등의 영역에서도 「동물보호법」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애견유치원에서 훈련 명목으로 고령의 소형견을 장시간 강제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자나 훈련자가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내세운 경우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동물의 종류·습성·건강상태·성향,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3)]

방송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넘어뜨린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실제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도 낙마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고, 표현의 사실성이나 제작비용 문제만으로 로프를 이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방송·영상 제작 관행도 동물의 고통과 복지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4)]

이러한 판례들은 동물 관련 법제가 단순히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서비스·문화 활동의 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훈련, 미용, 위탁관리, 촬영, 전시, 공연, 체험 등 동물을 활용하는 영역에서는 동물의 생명·안전과 고통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

23)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7. 의의 및 한계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 법원은 동물을 일반 물건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손해배상 영역에서는 반려동물의 시장가치만으로 손해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형사 영역에서는 동물의 고통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행위와 잔인한 도살을 판단하고 있다. 반려동물 귀속 분쟁에서도 등록 명의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취득·양육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판례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현재 판례는 동물을 권리주체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불가피한 접근이지만, 그 결과 동물의 생명 침해나 고통은 대체로 소유자 또는 보호자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동물의 생명성이나 고통 가능성이 법률관계에서 독자적인 고려 요소로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반려동물 귀속 분쟁은 여전히 소유권과 점유를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 판례가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취득·양육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물의 복리, 주된 돌봄관계, 사육환경, 건강상태, 학대·방임 여부 등은 아직 독자적인 판단 기준으로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셋째, 형사판례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면서 동물의 고통, 생명존중에 관한 사회통념,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학대 예방, 사육금지, 영업제한, 구조·보호비용 부담, 전시·촬영·훈련 기준 등 후속 제도의 정비로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례의 흐름은 동물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오히려 분명하게 보여준다. 해석론만으로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를 안정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향후 입법은 동물을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 적극 규정하고, 손해배상, 반려동물 귀속, 압류 제한, 사육금지, 동물영업, 전시·촬영·훈련 기준 등 구체적 법률관계에서 그 지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비물건화 조항의 한계와 적극적 법적 지위 규정의 필요성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안의 의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안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법」상 동물이 별도의 법적 범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안은 동물을 일반 재산적 객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또한, 이 문안은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물건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그 사이에 동물을 독자적 고려 대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문안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이다. 동물 관련 법제화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그칠 경우, 실제 법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과제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어떤 존재로서 법적 고려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위가 구체적 법률관계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부정형 선언과 물건 규정 준용 구조의 한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안은 부정형 규정이다. 이 문안은 동물이 물건과 다르다는 점은 말하지만, 동물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즉, 동물의 생명성, 감응력, 고통 가능성, 복지 필요성이라는 적극적 요소가 조문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26)]

---

25) 비교법적으로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는 이른바 소극적 비물건화형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민법」(BGB) 제90a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이 동물에게 준용된다"고 규정한다.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ABGB) 제285a조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이 동물에게 적용된다"고 정한다. 스위스 「민법」 제641a조 역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물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들 규정은 동물을 민법상 물건 개념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비물건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26)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식 조항은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도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이 동물을 "무엇이 아닌가"로만 정의할 뿐, 동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https://leoh.ch/article/view/4295/3113 최종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은 비물건화 선언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법 적용 단계에서 특별 규정이 없으면 결국 물건 관련 법체계로 돌아가게 되고, 동물의 생명성과 감응력은 준용 제한의 기준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비물건화의 목적은 동물을 '물건 개념 안의 예외적 하위 범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물 자체의 속성에 기반한 별도의 법적 고려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문은 물건과의 비교에서 출발하기보다, 동물 자체의 속성에서 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적극형 규정의 방향: 생명성과 감응력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보다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적극형 규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 '생명성'은 동물이 단순한 유체물과 달리 생명 유지, 건강, 안전, 죽음의 과정과 관련된 법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감응력'은 동물이 고통, 공포, 스트레스, 쾌고를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동물이 왜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조문 자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단순히 물건 개념에서 제외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성과 감응력이라는 적극적 근거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민법」에 동물복지의 세부 원칙을 모두 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민법」은 사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민법」 조문에서는 동물의 적극적 지위와 제한적 준용 원칙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복지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동물복지기본법(안)」 또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이다.

접속일: 2026.7.1.). 또한, 동물이 여전히 재산법상 객체로 남고, 물건법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 프랑스 「민법」 제515-14조는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동물보호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재산법 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민법」 제333 bis조도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면서, 물건 및 재산에 관한 법리는 동물의 본성 및 보호규정과 양립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는 구조를 취한다. 퀘벡 「민법」 제898.1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감응력 있는 존재이고 생물학적 필요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것"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성·감응력·생물학적 필요를 법적 지위의 근거로 삼는 적극형 입법례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도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감응력을 가진 생명체로 규정하고, 그 본성에 따라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동물복지기본법 또는 동물보호법에서의 보완

「민법」이 동물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둔다면, (가칭) 「동물복지기본법」 또는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의 공법적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가능하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리적·행동적 필요를 가지는 생명체로서 그 생명·안전 및 복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생명 보호, 불필요한 고통의 방지, 정상행동의 보장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민법」과 (가칭) 「동물복지기본법」 또는 「동물보호법」의 역할을 나누면, 「민법」은 법적 지위와 사법상 해석 원칙을 담당하고, (가칭) 「동물복지기본법」 또는 「동물보호법」은 정책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분야별 복지기준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민법」의 체계적 안정성과 동물복지법제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주요 법제 개선 과제

1.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적극적 규정 마련

동물 관련 법제 개선의 출발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있다. 기존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안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동물을 일반 재산적 객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문안은 동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물건화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법」상 동물의 지위는 단순한 부정형 선언에 그치기보다,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물은 생명 유지, 건강,

안전, 죽음의 과정과 관련된 법적 고려가 필요한 존재이며, 고통·공포·스트레스 등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점을 「민법」상 기본 원칙으로 명시할 때, 동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단순한 소유권 행사나 재산적 귀속 문제로만 처리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2. 동물에 대한 권한을 보호·관리 책임 중심으로 재구성

동물의 비물건화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논의가 아니다. 동물의 매매, 분양, 입양, 반환, 손해배상, 치료비·보호비용 부담 등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귀속 주체와 책임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일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사육자는 동물을 임의로 방치·유기·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는 재산적 귀속, 보호·관리 책임, 등록상 책임, 사육 적격성을 구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소유자가 실제 보호자와 다를 수 있고, 동물등록 명의자가 주된 돌봄자가 아닐 수 있으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학대·방임 이력이 있어 동물을 계속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소유권의 문제로만 처리하면 동물의 생명·안전과 돌봄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향후 법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전제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산적 귀속은 동물의 취득, 분양, 매매, 손해배상, 비용 부담과 관련된다.

둘째, 보호·관리 책임은 누가 실제로 동물을 사육하고 돌보며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이다.

셋째, 등록상 책임은 행정상 누가 동물등록, 변경신고, 유실·유기 방지, 연락체계 유지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이다.

넷째, 사육 적격성은 학대·방임·유기 등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을 계속 허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할 때, 반려동물 귀속, 사육금지, 동물등록, 보호비용 부담, 동물영업 규제 등 개별 제도도 보다 일관성 있게 설계될 수 있다.

3. 반려동물 귀속 기준의 입법화

최근 하급심 판례는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고, 취득 경위, 분양대금 부담, 입양계약, 실제 양육관계,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동물등록제도가 소유권 공시제도가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상 관리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여전히 반려동물 귀속 분쟁을 유체동산 인도청구, 소유권 귀속, 점유 권원, 특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문제로 처리한다. 이혼, 사실혼 해소, 동거관계 종료, 교제관계 종료 등 생활공동체가 해소되는 경우 반려동물을 누가 계속 돌볼 것인지는 단순한 소유권 문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간 공동으로 양육한 경우, 일방이 분양대금을 부담했지만 다른 일방이 주된 돌봄을 담당한 경우, 등록 명의자와 실제 보호자가 다른 경우, 일방에게 학대·방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민법」의 가족법 영역, 재산분할·조정 절차 또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귀속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고려 요소로는 반려동물의 취득 경위와 비용 부담, 동물등록 명의와 실제 보호자 정보, 주된 돌봄자, 사육·관리의 지속성,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와 특별한 돌봄 필요성, 사육환경의 안정성, 학대·방임 이력, 당사자 사이의 합의, 반려동물의 생명·안전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 귀속 기준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물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귀속을 단순한 물건 반환이나 재산분할 문제로만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방향은 재산분할 또는 조정 절차에서 반려동물의 생명·안전과 실제 돌봄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반려동물 귀속 합의, 돌봄 비용 분담, 동물등록 명의 변경, 의료기록 인계, 임시보호, 면접 또는 교류 방식 등을 조정절차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기준도 필요하다.

4. 동물등록제의 보호·관리 책임 등록제화

동물등록제는 소유권 공시제도가 아니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와 책임 있는 사육을 위한 핵심 기반 제도이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소유권 공시제도로 전환하기보다는, 보호·관리 책임자를 확인하고 유실·유기·학대 발생 시 책임 추적과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실제 보호자, 주된 사육지, 연락처, 공동 보호자, 소유자 또는 보호자 변경, 사망, 분실 등의 정보가 제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 단위 양육, 공동입양, 동거관계에서의 공동양육, 임시보호 후 입양 등 다양한 보호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정보 입력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양도·입양·분양 시 등록정보 변경과 계약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 명의와 실제 보호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유기, 분실, 학대, 보호비용 부담, 귀속 분쟁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정보를 단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기·분실·학대 사건에서 보호조치와 책임 추적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다만, 등록 명의를 민사상 권리 확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동물은 거래안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생명체이고, 등록 명의를 권리 공시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돌봄관계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는 소유권 공시가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 등록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육금지제와 사육자 적격성 심사체계 마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는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사육금지제는 단순히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동물을 보호·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이라는 권한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동물이 일반 물건이라면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 제한이 문제의 중심이 되겠지만,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면 사육금지는 동물의 생명·안전 보호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자 적격성 제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육금지제는 동물에 대한 권한이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사육금지제는 중대한 학대행위, 반복적 학대, 유기·방임, 영업상 대량 학대, 구조명령 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지 기간, 대상 동물의 범위, 위반 시 제재, 재심사 또는 해제 절차, 임시보호 및 소유권 처리,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전환지원 여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육금지제는 형벌의 부가제재로만 구성하기보다, 동물보호를 위한 예방적 행정조치와 결합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사·재판 단계와 행정 단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점검 권한,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의 연계, 금지명령 위반 시 후속조치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6. 반려동물 손해배상 특칙의 정비

동물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대표적 영역은 손해배상이다. 현행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상해·사망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시장가치가 낮더라도 보호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는 상당할 수 있고,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판례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단순히 시장가치나 교환가치로 제한하지 않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생활관계와 정서적 유대를 고려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려 목적 동물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특칙은 반려 목적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 치료비가 동물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망뿐 아니라 중대한 상해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치료비 외에도 구조비, 응급이송비, 임시보호비, 장례비 등 필요한 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손해항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모든 동물에 동일한 손해배상 특칙을 적용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영업 목적 동물은 사람과 맺는 관계와 법적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배상 특칙은 우선 반려 목적 동물에서 출발하되, 동물학대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동물에도 일정한 보호 효과가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강제집행과 압류 제한

동물이 「민법」상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 경우, 반려동물도 이론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치료·정서지원 기능을 하는 동물 등을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압류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성과 사람과의 생활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또는 압류 제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려 목적 동물, 장애인 보조견, 봉사동물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동물의 생명·안전과 보호관계가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동물을 일률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으로 두기는 어렵다. 영업 목적 동물, 축산업의 대상인 동물, 판매 목적 동물, 재산은닉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가 동물 등은 채권자 보호 및 거래질서와의 균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 방향은 동물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사육 목적, 사람과의 생활관계, 동물복지 침해 가능성, 대체 집행수단의 존재, 영업재산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8. 동물영업 관리와 산업 전환

동물 관련 산업은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다. 개식용종식법은 기존 산업을 법적으로 전환하는 대표 사례이다. 향후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체험업, 장묘업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생산업은 불법 번식장, 노후 시설, 시설기준 미달, 영업승계, 허가갱신, 구조동물 보호비용, 농지 입지 문제 등과 결합되어 있다. 단순히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보호와 동물복지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동물영업자는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동물을 상업적으로 생산·유통·관리하는 자이므로, 단순한 영업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의 보호·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물영업 법제는 영업자의 보호·관리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서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여 시설·인력 기준, 사육밀도, 관리인력, 번식동물의 건강상태, 출산·휴식 기준, 폐사·폐기 기록, 부모견·자견 이력관리, 학대·방임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전환 영역에서는 실태조사, 위험도 평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부여, 조건부 갱신, 허가취소와 영업제한, 폐업·전업 지원, 구조동물 보호체계, 보호비용 부담 기준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허가업자나 경과규정에 따라 영업을 계속해 온 영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갱신 시 현행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단계적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중대한 기준 미달의 경우 갱신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9.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또는 「동물보호법」의 기본법적 개편

동물 관련 법제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물복지의 공통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또는 동물보호법의 기본법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중심 법률로 기능하고 있으나, 동물의 법적 지위, 보호·관리 책임, 사육자 적격성, 분야별 복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물복지기본법 또는 기본법적 성격의 동물보호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동물의 생명성·감응력에 관한 기본이념, 동물의 생명·안전·복지 존중 원칙, 동물에 대한 권한과 보호·관리 책임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통계체계, 교육·홍보 및 책임사육 문화 조성, 동물학대·유기 예방과 재발방지, 사육금지제 및 사육제한제, 분야별 동물복지 기준, 재난 시 동물보호 체계, 민간단체·전문가·수의사와의 협력, 재정지원 및 보호시설 기준 등이 그것이다.

기본법은 추상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축산 관련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해석 원칙과 입법지침으로 기능해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개별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결국, 동물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은 동물에 대한 재산적 귀속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성·감응력을 전제로 권한과 책임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제한적 준용 원칙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복지기본법」은 보호·관리 책임, 사육자 적격성, 분야별 복지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동물 관련 법제는 이제 단순한 보호·관리의 단계를 넘어, 동물을 법체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현행 법제는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개식용종식법 등 개별 영역별로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물에 관한 사법관계는 상당 부분 소유권, 점유, 반환, 손해배상 등 재산법적 틀 안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법률관계 전반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고, 동물을 일반 재산적 객체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비물건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문안은 동물이 무엇이 아닌지는 말하지만, 동물이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동물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만으로는 실제 법 적용에서 다시 기존 재산법적 사고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비물건화 선언을 넘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적극적 규정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주체성을 부여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동물은 권리주체로 구성되기보다는, 생명성과 고통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은 동물에 대한 재산적 귀속을 전면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동물에 관한 권리 행사가 생명·안전·복지의 관점에서 제한되며,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판례의 흐름도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시장가치나 교환가치만으로 손해를 제한하지 않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생활관계와 정서적 유대를 고려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려동물 귀속 분쟁에서는 동물등록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취득·양육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려는 흐름이 확인된다. 형사판례에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면서 동물의 고통, 생명존중에 관한 사회통념, 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는 여전히 동물의 생명성·감응력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일반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향후 법제 개선은 동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책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적 귀속, 보호·관리 책임, 등록상 책임, 사육자 적격성을 구별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소유자가 실제 보호자와 다를 수 있고, 동물등록 명의자가 주된 돌봄자가 아닐 수 있으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학대·방임 이력이 있어 동물을 계속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반려동물 귀속, 사육금지, 보호비용 부담, 동물영업 규제 등에서 동물의 생명·안전과 돌봄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성·감응력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물건에 관한 규정은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준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려동물 귀속 분쟁에서 소유권이나 등록 명의만이 아니라 주된 돌봄자, 사육환경, 동물의 건강상태, 학대·방임 여부,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동물등록제는 소유권 공시제도가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사육금지제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안전 보호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자 적격성 제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반려동물 손해배상, 강제집행과 압류

제한, 동물영업 허가갱신제, 전시·촬영·훈련 기준 등에서도 동물의 생명성과 감응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 관련 법제가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물복지의 공통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립하는 기본법적 체계도 필요하다. 「민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사법상 해석 원칙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복지기본법은 보호·관리 책임, 사육자 적격성, 분야별 복지기준,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체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등 분야별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동물 관련 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물 관련 법제화의 핵심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언 이후 법이 동물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이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동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폐지하거나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려는 논의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성과 감응력을 전제로 기존의 소유권 중심 법리를 조정하고 보호·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제 전환의 출발점이다. 앞으로의 동물 관련 법제는 생명성, 감응력, 책임사육, 사육자 적격성, 분야별 복지기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반려견 안락사, 동물의 위자료 청구권 주체성)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 동물보호법위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애견유치원 훈련 상해, 동물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반려견 진료 과실,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170 판결(사실혼 해소 후 반려견 인도, 유체동산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195924 판결(교제관계 종료 후 공동양육 강아지 인도, 유체동산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방송 낙마 촬영, 동물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결정(임시보호 강아지 인도 단행 가처분)

2. 법령

「민법」(제98조, 제913조)

「동물보호법」(제9조, 제10조, 제15조, 제35조, 제6장)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3. 외국 법령

독일 「민법」(BGB) 제90a조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ABGB) 제285a조

스위스「민법」제641a조

프랑스「민법」제515-14조

스페인「민법」제333 bis조

퀘벡「민법」제898.1조

포르투갈「민법」(2017년 개정)

4. 정책자료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

제1주제 토론❶

동물 관련 법제의 한계 및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

- 소유권 중심 법리에서 '보호 책임'의 법체계로 -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제1주제 토론❶

동물 관련 법제의 한계 및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필요성
- 소유권 중심 법리에서 '보호 책임'의 법체계로 -

|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먼저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깊이 있게 정리해 주신 발제자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의 기본 방향에 공감하며, 특히 현행 법제상 동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동물을 민법상 유체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권리 객체가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의 대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전시동물·야생동물 등 이용 목적을 불문하고 그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공통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저는 현 법체계가 현실에서 어떠한 한계를 가져오는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의 선언이 왜 필요한지, 관련 법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가 현실에서 드러내는 한계

몇 달 전 한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그의 재산으로 동물(개와 알파카)을 압류하러 갔는데 현장에 가 보니 그 동물들이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러 간 사람의 눈앞에는 환가 가능한 재산이 아니라 즉시 보호가 필요한 생명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동물을 일반 유체물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은 누군가의 재물 혹은 무주물로 다루어집니다. 동물은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고, 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매각되어 환가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동물이 안전한지",

"누가 이 동물을 돌볼 능력과 책임이 있는지", "집행 절차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와 같은 문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폭염 속 차량 안에 동물이 갇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차량 창문을 깨고 동물을 구조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동물의 생명 보호가 독자적 법익으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현행 체계에서는 구조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동물 구조를 꺼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기본 법체계의 영향으로 동물보호법도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소유자 등에게 적정한 사육·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육·관리의무는 상당 부분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방치·방임이 제재되기 위해서는 동물의 상해·질병·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동물을 방임하더라도 소유권의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취급되어 학대로조차 판단받지 않거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이 격리되더라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람의 '소유권'이 동물의 안전보다 앞서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가 오랫동안 입법적 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결국 동물을 둘러싼 권한을 여전히 소유권 중심으로 이해해 온 법체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소유·사육한다는 것은 일반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다릅니다. 동물은 생명이 있고 각자의 생물학적 욕구를 가지며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 대한 권한에는 그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돌볼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현실에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법이 계속 같게 취급한다면, 그 법은 사회적 인식과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민법도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일찌감치 '**동물은 단순히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보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매우 크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31결정).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필요성 – 법의 관점의 변화 및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제안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 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1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동물이 곧바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 관한 모든 재산적 귀속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물의 입양, 치료비 부담, 손해배상, 반환청구, 보호비용 부담 등에서는 여전히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언은 중요합니다. 법이 동물을 단순한 유체물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고, 물건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바탕으로, 동물은 그저 재산권의 객체로서 '불가침'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으며, 동물보호법과 개별 행정법령, 민사집행법, 형사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동물의 안전과 보호·복지'를 중점으로 다시 정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동물을 물건과 달리 대하는 후속 규정을 마련할, 법원이나 행정기관은 법을 해석·집행할 때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고려할 단초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편, 발제자께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물을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의식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부정형 선언과 적극형 규정이 선택관계라기보다 결합관계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이 동물을 유체물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동물이 유체물로 포섭되어 온 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정형 선언은 기존의 법적 출발점을 끊어내는 문장으로서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법은 여러 각도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 문언은 가급적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문장에 이어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 생명·안전·복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민법 제90a조와 스위스 민법 제641a조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구조를 취합니다. 반면 프랑스 민법은 동물을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스페인 민법도 동물을 감수성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면서 물건에 관한 규정은 동물의 본성과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민법 제898.1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응력을 지닌 존재이며, 생물학적 욕구를 가진다. 동물을 보호하는 특별법 외에 민법 및 재산 관련 법률의 규정은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퀘백주 민법과 유사하게, 우리 민법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그 생명·안전 및 복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명료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이 동물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법상 구체적인 보호 규정 마련의 필요성

다만 민법 개정만으로 동물의 법적 보호가 충분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강제집행, 동물의 귀속, 보호비용 부담 등의 영역에서 후속 특별 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의무로 정비해야 합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먹이와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과 상해를 방치하거나, 장기간 고립·결박·방치하는 행위는 단지 바람직하지 않은 사육 방식이 아니라 보호·관리 책임의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방임·방치가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안전·복지를 침해하는 상태 자체에 대해 지도, 단계적 행정제재와 과태료, 반복·중대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을 이용한 영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와 복지 침해는 개별 영업자의 일탈만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허가·등록 요건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갱신제를 도입하며, 운영·관리 기준 및 폐업 시 동물 보호조치 등의 요건을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로 이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겨지는 동물의 보호와 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영업자의 권리를 단순히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동물을 보호·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동물을 맡겨도 되는지에 관한 사육자 적격성 심사제도입니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제한 입법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동물에 대한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책임을 방기한 경우 그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며, 학대의 재발 방지와 동물의 안전은 주요 법익이라는 원칙을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 박탈하고, 향후 1년 내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을 소유·사육하거나 관련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동물의 종과 습성에 따른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위스 동물보호법령은 반려·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동물의 사육·관리·급여·운동·사회적 접촉·공간 기준 등을 비교적 세밀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삶에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복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법령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동물을 이용하는 각 분야에서 "이 동물에게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기준을 구체화, 법제화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전반에서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법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비교법적으로 국가의 기본질서 안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국가가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스위스 헌법 역시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의 입법권 및 연방의 '생명체의 존엄 고려'를 명시합니다. 오스트리아도 연방헌법 차원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선언하고 있으며, 브라질 헌법은 동물에 대한 잔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헌법 개정 논의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물보호법 혹은 향후 제정된다면 동물복지기본법(안)에 다음과 같은 횡단적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고, 동물의 생명·안전 및 복지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3조가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농업·어업·운송·연구·기술개발·우주정책 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동물복지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 것과 같은 방향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 조항은 입법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 보호 책임을 법제화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등록제 – 보호·관리 책임 확인 제도로의 재설계

발제문이 특히 의미 있게 지적한 부분 중 하나는 동물등록제의 성격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소유권 공시제도가 아니며,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 등을 위한 행정상 관리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물등록 명의는 소유권 판단의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동물등록제는 소유권 등록보다는 보호·관리 책임 등록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정보에는 단순한 명의자만이 아니라 실제 사육 장소, 주된 보호자, 공동 보호자, 입양자 변경·사망 등 변경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사실혼 해소, 공동입양, 임시보호 후 입양 등에서 등록 명의와 실제 돌봄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등록제 설계·운영은 향후 반려동물 양육세와 연계하여 볼 필요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개 보유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또한 그 세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보호센터 개선, 입양 교육, 학대 대응 등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으로서 적절한 세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등록제는 그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등록 또는 이력 추적의 개념은 반려동물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제도인 축산물 이력제는 주로 유통의 투명성, 식품 안전, 소비자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이력 추적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말 이력제가 제대로 정비·운영된다면 경주마가 퇴역한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육되고 이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고, 방임·학대·과도한 재사용·도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국제적으로는 일부 동물에 대해 제한된 권리성을 인정하려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스위스 바젤슈타트 칸톤에서는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게 생명권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할 것인지가 주민투표에 부쳐진 바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3년 돌고래 전시·공연 금지와 관련하여 돌고래를 고도의 지능과 감응력을 가진 비인간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제가 곧바로 동물의 권리주체성 논의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동물을 계속 단순한 유체물로만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어도 동물이 생명과 감응력을 가진 존재이며, 그에 대한 인간의 권한은 보호·관리 책임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체계 전반에 분명히 새기는 일입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재산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법 질서 안에 생명성과 감응력이라는 제한 원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에 관한 소유, 점유, 반환, 손해배상, 압류 등의 법률관계를 '동물'이라는 존재의 특성에 맞게 재정립하고, 동물에 대한 권리를 물건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과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이는 결국 동물의 생명·안전·복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 방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제의 개정도 이어져야 합니다.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방임·방치에 대한 제재를 실효화하며, 동물을 이용한 영업에 대한 허가·갱신·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및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보호·관리 책임 확인 제도로 재설계되어야 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용 아래 놓인 동물 전반에 대해 복지 기준 마련 및 안전 확인 목적의 이력추적 체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임을 고려하도록 하는 횡단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는 법이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중대한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법체계의 출발점이자, 그에 걸맞은 후속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주제 토론❷

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이연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제1주제 토론❷

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 **이연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추진 배경

○ 동물보호법 제정('91) 이후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정**동물복지기본법 제정('27)**이 **국정과제에 포함**

- 동물복지의 대상·영역 확대에 따라 현재 영역·종류별로 규율되는 **동물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 마련** 요구 증대

○ 또한 **동물 학대 지속** 및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범죄자의 경우 동물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 확산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 **(추진 경과)** 동물 범위·동물복지의 이념 등 국민 설문조사'25.8~9월) 및 국내외 입법례 분석('25.12월), 기본법 초안 의견 수렴(~'26.6월)

○ **(주요 내용)** 동물복지의 기본이념·원칙 제시 및 관련 인프라 규정

- **(총칙) 고통과 감정(감응력)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 동물 규정 및 종 고유의 행동 보장 등 **적극적 의미의 동물복지 원칙** 명시
- 동물 복지의 정의,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국민의 책무, 관련 법 제·개정 시 **동물복지기본법 준수 의무** 규정

- **(이관·확대)** 동물복지종합계획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실태조사, 동물복지 정보시스템 등 **관련 추진 체계**를 동물보호법에서 **이관**

  * 동물보호→복지로 용어 정비 및 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차관→장관으로 격상 병행

- **(신규 도입)**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응, 동물 구조·보호, 조사·연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쟁점)** 소극적 비물건화 규정('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이 아닌 **적극적 규정** 도입 시 「민법」과 「동물복지기본법」 간 **호응 검토 필요**

□ 사육금지제도 도입

○ **(추진경과)** 동물보호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바탕 **국내 도입방안 마련**(K-농정협의체, '25.8~12월), **관계 부처 협의**('25.9월~'26.5월, 5회)

○ **(주요 내용)** 동물 죽임·상해로 유죄판결 시 일정기간 소유·관리 등 금지

- **(대상) 중한 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자
- **(금지 행위) 모든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행위**(소유 여부 무관)
- **(금지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
- **(임시 조치)** 소유자가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현행법상의 **피학대동물 보호·격리조치** 기간을 **유죄판결 시**까지 **연장***

* (현행) 5일 이상 격리 후 사육계획서·보호비용 제출 시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반환(의무)

- **(제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쟁점)** 동물의 생명존중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및 제한의 범위

- 다만, 해외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지위와 무관하게, 동물 학대 발생 시 해당 동물의 압수(몰수) 및 추가적인 사육금지 조치 규정

유죄판결(학대 범죄)에 한정			→	예방적 압수 가능	
핀란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스웨덴	스위스

□ 기타 :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한 검토

○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척추동물(식용목적 파충류·양서류·어류 제외)로, 반려동물을 **개·고양이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 「민법」 상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제2주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

|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 론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세 가구 중 한 가구'일 정도로 반려동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법무부가 2026. 6.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답하였다.[2]

한편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가령 개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96건에 달하고 있고,[3]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1290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4] 교통사고를 일으켜 반려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반려동물의 주인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도 증가하고 있는데, 50~500만 사이에서 소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가 적정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5]

---

* 본 발표문은 이계정·안소영,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법조 제70권 제2호(2021. 4), 8면 이하를 토론회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1) 서울파이낸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제약업계, '펫 헬스케어' 선점 경쟁",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946> (2026. 7. 1. 방문).

2) 데이터솜,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15> (2026. 7. 1. 방문).

3) 푸드투데이, "[2025 국감] 1500만 반려인 시대…개물림 2천건 넘는데 리드줄 기준조차 없다",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99095> (2026. 7. 1. 방문).

4) 법률신문, "반려동물의 비명",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2> (2026. 7. 1. 방문).

이하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단순히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가 타당한지,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신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동물의 법적 지위 논의

1.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반론

동물의 법적 지위는 뜨거운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 정치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6] 민법 제98조 제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자는 것이었다. 학계에서도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해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7] 또한 헌법상에 '동물보호'를 언급하자는 논의도 있었다.[8]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자.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9] 이와 관련해 동물을 물건이긴 하되 '특수한 물건'으로 보거나,[10] 인간과 물건 이외의 '제3의 존재'로 보자는 견해가 있다.[11] 또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프랑스 동물법인론을 참고하자는 견해가 있다.[12] 필자는 현시점에서는 동물 보호에 초점을 맞추되,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급진적인 방안보다 점진적인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 동물학대 방지 필요성,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감,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지 않는 관점을 입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과 물건 사이의 제3자로 보아 특정 사안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5) 중앙일보, ""콩알이 죽여놓고 50만원 주네요"...물건으로 치는 반려견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063> (2026. 7. 1. 방문).
6) 한국일보, 이정미 의원 "동물, 물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220925179589> (2026. 1. 26. 방문).
7)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 시안", 재산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2012), 259면.
8)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18년도 법무부 연구 용역 보고서, 71, 132, 145면.
9) 윤철홍, "애완견의 사망시 손배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 법조(제63권 제1호), (2014), 250면.
10) 김민동, "수의사의 애완동물 수의료과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암법학(제35호), (2011), 223면.
11)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제25호), (2017), 538면.
12)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51권 제3호), (2010), 47~48면.

2. 비교법적 검토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에서 공통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동물은 권리의 주체보다는 객체에 가깝다. 인간과 동등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속능력, 소송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법 제285a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동물에게 물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다.[13] 독일은 민법 제90a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4] 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에 동물 학대가 정당화될 수 있고 동물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바, 생명과 고등감각을 지닌 동물을 일반 다른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스위스의 경우 민법 제641a조에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해서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6]

한편,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동물을 생명이 있는 물건(living property)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곤란하고, 동물 보호 관점에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7]

---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ist.
이하 독일민법전 번역은 양창수, 2018년판 독일민법전, 박영사(2018)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15) 홍완식, 앞의 논문, 538면.

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641a
1 Les animaux ne sont pas des choses.
2 Sauf disposition contraire, les dispositions s'appliquant aux choses sont également valables pour les animaux.

17) 吉田, 聡宗, "動物の法的地位に関するフェイヴァー理論の検討 : 「人 / 物」二元論の再考に向けて", 一橋法学(第18巻 第1号), (2019. 3), 259면.

3. 과학적 측면에서 검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점을 과학적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연구나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동물의 신체정신능력 관련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 동물인 고릴라, 앵무새(Parrot), 범고래(Orca), 개, 쥐, 까마귀(Crows), 코끼리 모두 신체정신능력 항목 총 5가지를 충족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인식능력(self aware), 대화 능력, 미래에 대한 계획(plan for future) 능력, 도구 이용능력/가르침(use tools/teach) 능력, 움직임(move) 능력이다. 이때 언어 능력과 관련해 고릴라와 앵무새는 직접 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동물은 의사소통은 하나 직접적으로 언어 구사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8]

생명이 물건과 다른 점은 감정(emotion)이 있다는 것이다. 동물 체내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옥시토신(oxytocin)은 감정과 관련이 있다.[19] 가령 도파민은 행복이란 감정과 관련이 있다.[20] 이와 관련 뇌의 측좌핵(nucleus accumbens)부분 도파민 수송체(dopamine transporter)를 조작했더니 쥐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1] 이런 개선 증상은 쥐가 공간의 중앙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대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으로 확인되었다. 쥐의 행동의 현저한 변화를 통해 쥐의 감정 영역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

18)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3.
이같이 동물은 생명이 가지는 능력을 두루 갖추었지만,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인, 태아, 코마 상태의 사람(comatose person)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법인의 경우 신체정신능력 다섯 가 지 중 세 가지, 즉 대화 능력, 미래에 대한 계획, 움직임에 대한 능력만 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free speech)와 종교의 자유(religious freedom)가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대비된다. 태아의 경우 움직임을 제외한 나머지 능력이 전혀 없고, 움직임도 제한적이다. 그런데 기본권(fundamentalrights) 중 생명권(right to life)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freedom from abuse)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코마 상태의 사람은 약간의 자기인식을 제외하고 모든 신체정신능력이 없는데 기본권과 투표권, 언론의 자유 등의 일반권리가 인정되어 동물과 차이를 보인다.

19) 양일석 외 14인, 『수의생리학』, 광일문화사(2006), 531~533면.

20) Dfarhud, Dariush *et al.*, "Happiness & Health: The Biological Factors- Systematic Review Article",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3, No. 11, 1475 (2014).

21) Amine Bahi, Jean-Luc Dreyer, "Dopamine transporter (DAT) knockdown in the nucleusaccumbens improves anxiety- and depression-related behaviors in adult mice", *Behavioural Brain Research* vol. 359, 104, 106~107, 111 (2019).

Ⅲ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민법 개정안 검토

1. 입법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은 자기인식능력이 있고, 의사소통하며 감정이 있는 등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험과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람과 동물의 유사점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물별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유인원이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물은 물건보다는 '생명(生命)'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고, 상식선에서도 도출되는 결론이다. 법 현실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소송이나 상속 분야 등에서 동물에게 소송능력 내지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급격한 변화는 법적 안정성과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동물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은 필수적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생명존중, 동물 보호나 동물 학대 방지 목적을 위해서 천명할 필요가 있다.[22] 한편, 동물보호법과 민법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은 필요하다.[23] 가령 동물보호법 목적 조항은 동물이 생명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동물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도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관철해야 한다. 미국의 법철학자 드워킨(R. Dworkin)이 강조한 법의 통합성(integrity)을 위해서 민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24]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는 경우 동물보호에 관한 새로운 민사법 조항들이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많은바(Ⅳ. 참조) 동물이 생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

22) 同旨 홍완식, 앞의 논문, 538면.
23)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법과 정책연구(제16권 제1호), (2016), 47면.
24) 법의 통합성에 대하여는 Ronald Dworkin, Law's Empire, Hart Publishing(1986), pp. 228~238.

사안에서 동물이 물건이라면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동물의 객관적 가치(market value)를 한도로 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한 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의 신설은 동물에 대한 관점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에서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민법 조항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는 동물과 같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 입법에 있어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민법 개정안 검토

가. 현재 법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법무부 개정안 참조).

현 행	법무부 개정안	필자의 수정의견
제4장 물건 <신 설>	제4장 물건과 **동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물건과 **동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은 이 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의 비물건화 관련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발의일 (의원, 의안번호)	주요 내용	진행상황
1	'24. 6. 11. (박희승, 344)	○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 준용 ○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위자료 인정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2	'24. 9. 4. (박홍근, 3636)	○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감각이 있는 생명체")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 준용	
3	'24. 11. 28. (김태년, 6025)	○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 준용	
4	'25. 7. 3. (송재봉, 11242)	○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감응력을 가진 존재")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 준용 ○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 규정 ○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위자료 인정(치료비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인정)	법사위 계류 중
5	'25. 8. 8. (김예지, 12058)	○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위와 같은 동물의 비물건화 선업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현행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 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회 전문의원은 동물 보호 취지 및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개정안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물의 물건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모든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건의 마련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5)]

25)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동물의 법적 지위 및 동물에 대한

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일단 제4장의 제목을 '물건'에서 '물건과 동물'로 함으로써 동물이 물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동물의 보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생명존중, 동물 보호나 동물 학대 방지 목적을 위해서 천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은 현시대의 사회통념과 일치한다는 점, 시대의 변화에 입법자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된다. 무엇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의 신설은 동물에 대한 관점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동물관련 법해석 또는 법적용을 하는 법관이 경제성과 동물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할 때 후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정당화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26]

다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고 곧바로 '동물에 대해서는 ... 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이 다소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외관상 내지 의미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법과 같이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동물의 비물건화의 취지가 동물 보호, 생명 존중 및 동물 학대 금지에 있음이 전면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민법은 시민의 법(bürgerliches Recht)으로서 사법적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적 법률관계의 변모를 꾀하는 경우에도 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민법 조항은 향후 특별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에서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경우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의상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동물을 특별히 보호하는 경우만 위 조항이 미치게 된다. 즉 민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동물이 특별히 보호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은 이 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다.

손해배상 특칙 규정> 참조.

26)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202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면.

다. 법원행정처 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에서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유정물(有情物)인 동물을 무정물(無情物)과 구분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수긍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현행 민법상 이분적인 권리 분류 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청할 만한 의견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무부 개정안을 반대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법무부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을 두고 있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함으로써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권리의 객체를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민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정물(有情物)인 동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물건'에 관한 법리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규율함에 있어 기존 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바, 법무부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면서도 동물에 대한 물건 법리의 적용도 일정 범위에서 긍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법원은 동물에 대하여 '물건'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판결을 실제 내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물건의 훼손에 대해서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법원은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27] 가령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2013가소35765 판결은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고,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27) 피고(반소원고) 소유 반려견이 원고(반소피고) 소유 차량에 치여 다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가소201265 판결), 원고 소유 반려견이 피고 차량에 치여 다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 원고의 반려견이 피고의 반려견에게 물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4698 판결). 한편, 반려동물이 죽은 사안에서 반려견의 시장 가격 이상의 배상액을 인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 소유 반려견이 피고의 쇠파이프에 의해 죽은 사안에서 반려견의 시장 가격,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각 인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512394 판결). 원고 소유 반려견이 진돗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에서 구매가 일부와 위자료를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소35765 판결). 원고 소유 반려견이 피고 차량에 치여 죽은 사건에서 시장 가격 일부와 위자료를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소2068733 판결).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처럼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피고의 개를 방치하여 사고를 야기한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물건이 훼손된 경우 교환가치나 수리비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8]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2010가단414531 판결에서는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하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강아지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법형성기능보다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우선시하는 성문법국가에 속한다. 동물을 특수하게 취급하고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법관이 법형성을 통해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성문법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관 개개인이 동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 재판을 하기보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을 하는 방안이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29]

1978년 파리의 유네스코에서 세계 동물 권리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30]을 한 후 43년이 흘렀다. 매우 늦었지만 우리 민법상으로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의 이념을 천명할 필요는 무시하기 어려운 시대적 요청인바,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사유가 그 시대적 요청을 보류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28)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등 참조).

29)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에 대하여는 이계정,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실제,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 호적정정 결정과 특별한정승인 판결의 재음미",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2024. 12), 236면 이하.

30) 세계 동물 권리선언이란 동물의 기본권을 인정하기 위해 1978년 10월 15일 유네스코에서 선언문을 공표한 것을 말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움직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Jean-Marc Neuman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 OR THE CREATION OF A NEW EQUILIBRIUM BETWEEN SPECIES", 19 *Animal L.* 63, 92 (2012).

라. 동물 개념 불명확성 관련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31] 가령 척추동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척추동물도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32] 앞서 본 박홍근 위원안, 송재봉 위원안도 '동물' 개념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박홍근 위원안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 송재봉 위원안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 참고로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하건대 위와 같은 지적은 경청할 만한 견해이지만,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자 동물보호의 원칙을 천명한 일반적 규정(general clause)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 동물에 대해서 물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지는 '다른 규정'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다른 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게 동물을 어느 범위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바, '다른 규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동물에 대한 압류 금지를 민사집행법에 신설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집행법(Exekutionsordnung) 제251조 제4호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동물에는 판매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치가 7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채무자나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젖소, 돼지, 염소나 양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3] 스위스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과 생계에 필요한 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집행 및 도산법(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제92조 제1항 제1a호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로 재산 증식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압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34]

---

31) 최정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의의와 한계",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1호(2022), 299면.

32) 동물보호법에 관한 동물 정의에 관한 논의로는 함태성,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환경법과 정책(202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24면.

33) 원문은 다음과 같다.
§ 251 Der Execution sind ferner entzogen:
4. nicht zur Veräußerung bestimmte Haustiere, zu denen eine gefühlsmäßige Bindung besteht, bis zum Wert von 750 Euro sowie eine Milchkuh oder nach Wahl des Verpflichteten zwei Schweine, Ziegen oder Schafe, wenn diese Tiere für die Ernährung des Verpflichteten oder der mit ihm im gemeinsamen Haushalt lebenden Familienmitglieder erforderlich sind, ferner die Futter- und Streuvorräte auf vier Wochen;

또한,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젖소, 염소, 양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35] 독일은 가정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 예외조항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동물보호 이익의 비교형량으로 압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비교형량 시 '사람의 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려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우선 독일 민사소송법 제811c조에서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와 예외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민사소송법 제811c조 제1항은 "가정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1c조 제2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은 동물 보호와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형량하여, 동물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 고가의 동물 가치를 이유로 압류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6]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에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을 신설한다면,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동물 또는 채무자의 생계에 필요한 가축'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압류금지라는 목적에 비추어 개별 규정에서 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므로, 민법 개정안에서는 굳이 동물에 대한 정의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3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92
1 Unpfändbar sind:
1a.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https://fedlex.data.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11/529_488_529/20190101/de/pdf-a/fedlex-data-admin-ch-eli-cc-11-529_488_529-20190101-de-pdf-a.pdf> (2026. 1. 27. 방문).

35)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92
1 Unpfändbar sind:
4. nach der Wahl des Schuldners entweder zwei Milchkühe oder Rinder, oder vier Ziegen oder Schafe, sowie Kleintiere nebst dem zum Unterhalt und zur Streu auf vier Monate erforderlichen Futter und Stroh, soweit die Tiere für die Ernährung des Schuldners und seiner Familie oder zur Aufrechterhaltung seines Betriebes unentbehrlich sind;
<https://fedlex.data.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11/529_488_529/20190101/de/pdf-a/fedlex-data-admin-ch-eli-cc-11-529_488_529-20190101-de-pdf-a.pdf> (2026. 1. 27. 방문).

36) 원문은 다음과 같다.
§ 811c Unpfändbarkeit von Haustieren
(1)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sind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wegen des hohen Wertes des Tieres zu, wenn die Unpfändbarkeit für den Gläubiger eine Härte bedeuten würde, die auch unter Würdigung der Belange des Tierschutzes und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Schuldners nicht zu rechtfertigen ist.

Ⅳ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개정 민법의 효과

1. 민법 개정안의 중대한 함의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효과는 결코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동물의 지위 재정립은 인간과 동물의 전체적인 법적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37] 사법관계의 기본이 되는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동물을 지배와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사고에서 공생과 존중의 대상으로 삼는 사고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전환의 가속화는 '동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법관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입법부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내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추상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법관의 법형성의 폭이 비교적 넓은 나라이다. 동물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도 입법부가 기민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동물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법형성이 입법의 불비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 적어도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법관의 법형성에 온전히 맡긴다면 어느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관은 동물 관련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단순히 물건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재고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재판이 '동물 보호의 이념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실체적 효과가 미약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재판규범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규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7) 최정호, 293면.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동물 관련 규정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적인 규정을 장을 바꾸어 살피면 다음과 같다.

2. 동물의 사상 시 손해배상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앞에서 보았듯이 법원은 대체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건에서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아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밖에 양육 기간, 정서적 유대, 애착, 반려동물이라는 특별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38] 그러나 입법적 측면에서 이런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 개정안이 개진되었다. 이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교환가치나 수리비 배상 원칙의 예외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39] 핵심은 동물의 가치 이상의 치료비와 동물의 소유자 등이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제시된 구체적인 개정 시안은 다음과 같다.[40]

---

38)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2010가단414531 판결에서는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하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강아지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2013가소35765 판결도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고,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처럼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피고의 개를 방치하여 사고를 야기한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원고의 개가 원고의 애완견으로 지내온 기간, 원고 개의 교환가치,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라고 판시하였다.

39)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등 참조).

40)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 시안", 재산법연구(제29권 제3호), (2012), 270면.

민법 제752조의2(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 ①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영리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닌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한 때에도, 신의칙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치료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을 살상케 한 자는 동물의 보유자 혹은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개정 시안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동물이 죽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신의칙'과 '적절한'이란 용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41]

나. 비교법적 검토

독일과 스위스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동물의 치료비를 동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인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민법 제251조 제2항에 "피해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2]

한편, 스위스에서는 채무법(Code des obligations) 제42조 제3항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로 재산 목적이나 이윤 획득 목적으로 보호하는 동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의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3] 또한 스위스 채무법은 동물의 사상 시 '동물에 대한 애착의 가치(la valeur affective de l'animal)'를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 채무법 제43조 제1항은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로 재산 목적이나 이윤 획득 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는 법관은 동물 보유자 또는 동물과 친한 사람의 동물에 대한 애착의 가치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4]

---

41) 손영실,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2016), 64~65면.
42) 원문은 다음과 같다.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
(2) 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
43) Art. 42
3 Les frais de traitement pour les animaux qui vivent en milieu domestique et ne sont pasgardés dans un but patrimonial ou de gain font l'objet d'un remboursement approprié, mêmes'ils sont supérieurs à la valeur de l'animal.

한편,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의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 외에 치료비와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Burgess v. Shampooch Pet Industries, Inc. 사건에서 반려견의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 $1,308.89를 인정하였다.[45] 반려견의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거나 측정할 수 있더라도 낮다는 이유로 시장 가치를 초과하여 치료비를 인정하는 미국 판례의 대표적인 예이다.[46] 다른 예로는 Kaiser v. United States 사건이 있다.[47] 법원은 경찰이 개에게 총을 쏜 사건에서 치료비 $1786.50을 인정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의 죽음에 따른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48] 가령 Campbell v. Animal Quarantine Station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반려견의 죽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인정했다.[49] 이 사건에서 다섯 명의 가족 구성원이 반려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총 $1000을 배상액으로 측정했다. 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50] 그밖에 텍사스 주, 루이지애나 주, 켄터키 주, 아이다호 주, 플로리다 주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51] 참고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52] 그 이유는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에 포함하면 사기와 소송이 범람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43
Lorsqu'un animal qui vit en milieu domestique et n'est pas gardé dans un but patrimonial ou de gain, est blessé ou tué, le juge peut tenir compte dans une mesure appropriée de la valeur affective de l'animal pour son détenteur ou les proches de celui-ci.

45) 반려견의 주인이 반려견 미용을 맡겼는데 반려견이 고관절 탈구(dislocated hip)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미용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Burgess v. Shampooch Pet Industries, Inc, 131 P.3d 1248 (Kan.App., 2006).

46) Dobbs/Hayden/Bublick, Hornbook on Torts, West(2016), p. 857.

47) Kaiser v. United States, 761 F. Supp. 150 (D.D.C. 1991).

48) David S. Favre, "Overview of Damages for Injury to Animals- Pet losses",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03).
available at <https://www.animallaw.info/article/overview-damages-injury-animals-pet-losses>.

49) Campbell v. Animal Quarantine Station , 632 P.2d 1066 (Hawaii, 1981).

50) David S. Favre, 앞의 논문.

51) David S. Favre, 앞의 논문.

5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목격하지 않는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 반려견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Dobbs/Hayden/Bublick, 앞의 단행본(주 40), pp. 713~714; John L. Diamond, Cases and Materials on Torts, West(2008), p.333); 이덕환, "미국 판례법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강의중교수정년기념논문집(2002), 453면). 가령 Fackler v. Genetzky와 Roman v. Carroll 사건에서는 동물이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정신적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Fackler v. Genetzky, 595 N.W.2d 884 (Neb., 1999); Roman v. Carroll, 621 P.2d 307 (Ariz.App., 1980).

다. 입법 제언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무에서 이미 반려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법조문에도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하다. 특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설시가 필요하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에서 염두에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이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 동물이 다쳤을 때는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인정되는 반면,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의 가치만 배상하게 되어 권리구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53] 둘째, 치료비의 경우 반려동물 가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본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채무법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하면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조문에도 범위 제한에 관한 언급이 필요한바,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로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배상의 특칙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주, 즉 그런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편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통상손해' 범주에 편입시킴으로써 불법행위자에게 과도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러한 과도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라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개정안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에 대한 조항이다. '이해관계인'이란 표현으로 손해배상청구 주체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나 가족 정도를 청구권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애정을 나눈 사람들을 청구권자로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소유자나 가족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인의 획정이 필요하나 실무례가 축적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획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53) 同旨 손영실, 앞의 논문, 64~65면.

개정안
제764조의2(반려동물을 살상한 경우의 특칙) ① 가정에서 영리목적이 없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② 반려동물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준용하되,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2항, 제3항은 반려동물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가 불명확한 것이 아닌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54]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 1의3이 규정하고 있는데,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에는 "pet animal은 통상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pet)로 개, 고양이,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등을 의미하며, 외래 동물이나 야생 동물은 제외한다."라는 규정,[55] "반려동물은 길들여진 동물로 보통 소유자의 가정 내 또는 가정과 근접하여 기르는 동물"이라는 규정이 있다.[56] 독일 민사소송법 제811c조는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내에서 사육하는 동물", 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 제250조는 "감정적 유대가 있는 가축으로서 판매 목적이 없는 가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정의할 때 '감정적 유대'라는 문구를 넣을지 문제가 되나, 가정에서 기른 지 얼마 안 되었건 "감정적 유대"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건 간에 가정에서 기르는 비영리목적 동물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이라는 표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정에서 영리목적이 없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는 정의는 반려동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정의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2조 1의3을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민법이 사법의 기본법이므로 가급적 타법을 준용하는 안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54) 법원행정처는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55) CFR: Title 9.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1.1 – Definitions("pet animal means any animal that has commonly been kept as a pet in family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dogs, cats, guinea pigs, rabbits, and hamsters. This term excludes exotic animals and wild animals") https://www.law.cornell.edu/cfr/text/9/1.1.

56) 미국 루이지애나 Pet Laws § 1391(""Pet" means any domesticated animal normally maintained in or near the household of the owner thereof). https://lasc.libguides.com/c.php?g=436994&p=2980237.

3. 반려동물에 대한 부담부 유증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9년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인 768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7] 고령사회[58]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생을 보내며 말년의 고독감을 극복하려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 이후에 홀로 남게 된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반려동물소유자로서도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반려동물이 제대로 돌보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많다. 법이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대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청되는바, 상정 가능한 방안으로는 부담부 유증과 신탁이 있다.

가. 반려동물에 대한 부담부 유증과 입법 제언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말한다. 수증자의 책임과 관련해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1조 본문).[59] 부담부 유증의 취소 청구는 가사비송사건 라류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48)). 취소 심판 확정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유증의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유증 재산이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된다.[60] 만약 수증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수증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111조 단서). 일부 이행의 경우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61]

---

57) 통계청의 2019년 고령자 통계는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701> (2026. 1. 5. 방문) 참조.

58)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하는데(권혁남·전상길, "고령자의 고용 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관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1호(2009), 42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59)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2020), 440~441면.

60)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3판), 박영사(2020), 570면.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부담부 유증의 방식으로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담부 유증은 동물보호계약이나 부담부증여와 달리 단독행위이며, 사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일반적인 부담부 유증에 관한 법 조항만 있으며, 반려동물의 부담부 유증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입법 제언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매장장소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62] 반려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부담으로 하는 유증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법정유언사항의 하나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 유증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조치는 부담의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민법 제1088조의2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 유증) ①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관리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부담으로 하는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반려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소홀히 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반려동물 신탁

가. 반려동물 신탁의 필요성

신탁은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한다는 점, ② 수탁자는 신탁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점, ③ 수탁자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점을 핵심표지로 한다.

6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가족법』 (제16판), 법문사(2019), 847면; 지원림, 앞의 단행본, 2216면.
62)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공 2008하, 1727).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신탁이 종료되지 않고 위탁자의 의사에 따른 재산관리나 사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63]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수탁자에게 매우 엄격한 의무인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과한다는 점이다.[64] 수탁자의 신인의무는 크게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눌 수 있는데, 주의의무(duty of care)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prudent person)이 같은 상황에서 취했을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충실의무는 이익충돌금지원칙(no conflict rule)과 이익취득금지원칙(no profit rule)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수탁자는 이익취득금지원칙에 따라 신탁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

신탁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반려동물소유자의 사망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바, 반려동물신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뉴욕 주의 경우에 반려동물 신탁법(NY Est Pow & Trusts L § 7-8.1)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65]

「뉴욕 반려동물 신탁법[66]

(a) 지정된 가내 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신탁은 유효하다. 이 신탁의 원금이나 소득은

63) 신탁을 통해 위탁자의 의사가 위탁자의 사후에도 관철된다는 점에서 '죽은 자의 지배(dead hand control)'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 이계정, 앞의 논문, 75면.

64) 이계정,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2017), 134면 이하.

65) 이에 대한 소개로는 조성자, 앞의 논문, 364면 이하.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필자가 반려동물 신탁 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66) 원문은 다음과 같다.
§ 7-8.1 Trusts for pets
(a) A trust for the care of a designated domestic or pet animal is valid. The intended use of the principal or income may be enforced by an individual designated for that purpose in the trust instrument or, if none, by an individual appointed by a court upon application to it by an individual, or by a trustee. Such trust shall terminate when the living animal beneficiary or beneficiaries of such trust are no longer alive.
(b)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the trust instrument, no portion of the principal or income may be converted to the use of the trustee or to any use other than for the benefit of all covered animals.
(c) Upon termination, the trustee shall transfer the unexpended trust property as directed in the trust instrument or, if there are no such directions in the trust instrument, the property shall pass to the estate of the grantor.
(d) A court may reduce the amount of the property transferred if it determines that amount substantially exceeds the amount required for the intended use. The amount of the reduction, if any, passes as unexpended trust property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e) If no trustee is designated or no designated trustee is willing or able to serve, a court shall appoint a trustee and may make such other orders and determinations as are advisable to carry out the intent of the transferor and the purpose of this section.

신탁증서의 목적에 맞게 지정된 사람, 또는 지정된 사람이 없다면, 개인이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사람이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 신탁은 이 신탁이 보호하는 수혜 동물 또는 동물들이 죽은 때 종료된다.

(b) 신탁증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 원금이나 소득의 어느 부분도, 신탁증서로 보호받는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가 아닌 수탁자의 사용을 위 해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될 수 없다.

(c) 신탁이 종료될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증서에서 명시된 대로, 미사용된 신탁재산 을 이전하고, 신탁증서에 그런 지침이 없으면,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자의 재산으로 이전된다.

(d) 법원은 신탁금이, 신탁증서에서 의도된 용도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상당할 정도 로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신탁금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축된 신탁금은 위 (c) 항에서 명시된 대로, 미사용된 신탁금으로 이전된다.

(e) 수탁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된 수탁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법원은 수탁자를 임명하고, 신탁자의 의도와 본 조항의 목적을 실행하도록 권고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 입법 제언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신탁을 활용하면 반려동물의 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사후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을 친지에게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수탁자로서 신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 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2조에 의하여 허용되나, 수익자가 없는 관계로 수탁자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신탁법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신탁법 제67조, 제68조). 신탁관리인은 목적신탁에서 신탁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67] 신탁법상으로는 신탁관리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반려동물 신탁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신탁관리인 선임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반려동물 신탁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67) 최수정, 『신탁법』 (제2판), 박영사(2019), 162면.

개정안
신탁법 제5조의1(반려동물신탁) ① 반려동물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신탁(이하 '반려동물신탁'이라고 한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탁은 반려동물이 죽은 때 종료된다. ② 반려동물신탁이 설정될 경우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반려동물신탁이 종료되는 경우에 남은 신탁재산은 신탁자의 재산으로 이전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V 결 론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고, 현세대에서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시민의 삶의 일부이다. 입법 영역에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共存)을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동물 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제는 시도를 넘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부디 이 글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과 동물 관련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2주제 토론❶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정다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토론❶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정다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님의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고찰"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급격한 권리주체화를 피하면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기점을 마련하고 그 후속 파장을 손해배상, 강제집행, 상속 및 신탁 등 사법 전반으로 연결해 주신 탁월한 통찰에 깊이 공감합니다.

토론자로서는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바탕 위에서, 실제 입법 문안과 운영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실무적 긴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선언 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체계적 긴장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 규정을 준용한다"는 구조를 취하는 것은, 실무 현장에서 자칫 "물건이 아니라면 재산권적 처분이나 담보·집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새로운 다툼과 불확실성을 유발할 우려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선언 규정이 분쟁을 줄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려면, 준용의 예외가 되는 사유(동물복지, 생명존중 등)나 특칙을 조문 혹은 해석 지침 형태로 조금 더 구체화하여 체계적 모순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동물의 개념과 보호 범위 설정 문제도 제기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민법의 비물건화 규정은 일반조항으로 두고, 개별 규정에서 목적에 맞춰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정의 없이 선언만 둘 경우, 실무에서는 척추동물 중심의 동물보호법상 정의와의 충돌, 반려동물과 농장·실험·야생동물의 경계,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 등에서 빈번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론(예: 손해배상)에서 반려동물의 독자적 정의를 두는 방식이 누적되면 민법 내부에서 정의가 분절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타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이 법 또는 별도의 법률"이라는 문구가 자칫 민법 각론 전반에 동물 보호를 무한정 끌어들이는 만능 조항으로 오해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정교한 체계적 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손해배상 영역의 특칙 요건 설계 역시 중요한 논점입니다. 동물이 다친 경우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려는 교수님의 제안은 피해 구제 측면에서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이것이 통상손해로 편입될 경우 가해자의 책임 예측가능성이 약화되고 실무상 과잉 진료 등의 다툼이 증폭될 소지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는 문구 자체가 새로운 다툼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상한이나 기준 요소(치료의 필요성, 수의학적 표준 등)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청구권자를 "가족 등 이해관계인"으로 확장하는 것 역시, 임시보호자나 장기 돌봄 제공자 등으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구권자를 최소한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동물 압류금지를 다룬 강제집행 영역은 발제문에서도 지적되었듯 비물건화의 진정성이 가장 날카롭게 시험받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채권자 보호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원의 비교형량에 맡기는 독일식 모델은 유연하지만 집행 현장의 재량 논쟁을 부추길 수 있고, 가액 기준을 두는 오스트리아식 모델은 명확하지만 생명체를 금액으로 재단한다는 거부감에 부딪힙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딜레마 속에서 명확성과 형량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시는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판단 부담을 통제하면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막을 구체적 운영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 유증과 반려동물 신탁 등 사후 돌봄에 관한 논의는 민법 개정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반려동물 부담부 유증을 법정유언사항으로 명확화하는 방안은 분쟁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유언의 엄격한 법정주의를 확장하는 체계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감독 공백을 메우는 훌륭한 장치임에도, 비용과 운영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실제 이용 문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 해석론으로 포섭할 영역과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은 민법에, 구체적인 작동 규칙은 개별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정교화하는 교수님의 접근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다만 실제 권리구제의 현장은 손해평가 기준 세분화, 집행절차 보호, 행정규제 등 촘촘한 작동 규칙에 의해 좌우되므로, 민법의 거시적 선언과 함께 특별법 중심의 규율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언 규정 도입과 무관하게 어떤 특칙들을 동시 입법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부분들을 실증적 검증을 요하는 후속 과제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해 교수님의 혜안을 나누어 주신다면 본 논의가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시대적 변화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고견을 보여주신 교수님의 논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고민하던 주제에 대해 교수님의 정교한 논리와 식견을 바탕으로 제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토론❷

비물건화가 응답적 관계를 담아내기 위해 더 고찰해야 할 것들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제2주제 토론❷

비물건화가 응답적 관계를 담아내기 위해 더 고찰해야 할 것들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토론자는 법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인간중심적이고 근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탈중심적이고 관계론적으로 상호 얽힌 존재로서 이해되고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나름대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규정한 여러 건의 법률안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성을 충분히 반성한 결과이길,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시도는 21대 국회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반론을 잘 이겨내길, 개정될 경우 향후의 주관적 목적론적 해석은 우리의 다른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역할은 이계정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민법 개정안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과 발제문을 아우르며 이번 개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관계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려 합니다.

Ⅰ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과 지향하는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동물의 비물건화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것은 입법과정이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던지는 메시지인 동시에 개정 시 주관적 목적론적 해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동물을 「민법」에서 무엇이라 규정할지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영역에 속하고,[1] 사법부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을 존중해

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 당시의 문제의식과 목적하는 바는 향후 구체적 판단 대상이 된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초의 입법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착해 갈수록, 동물의 비물건화 취지를 담은 향후의 구체적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민법에 도입될 때도, 예외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처음의 입법목적을 그대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의 문제의식과 목적은 앞으로 우리 법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21대 국회 당시, 법무부의 사공일가 TF는 1인가구 대책의 하나로서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에 초점을 두어 동물의 비물건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계로 제시하며 달라진 생활세계에 따른 법적 변화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대신 분명한 지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2] 한편, 발제문에서는 동물의 자기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감정과 생명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물건화의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21대와 22대 국회 당시 법무부의 태도는 인간의 이익 또는 이해(理解)를, 발제문은 인간과 유사한 속성이나 능력을 이번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들이 이번 개정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규정의 문제의식인 동시에 입법목적의 한 축을 구성할 것입니다.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된 또 다른 객체로 둔다는 것은 사적 거래관계와 가족관계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동물은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며 반려인 등 일정 범위의 인간과 유대감을 나누는 존재이므로 인간이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달라졌다는 것이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무엇인지는 개정안의 법문에서 '보호'를

1) 헌재 2019. 9. 26. 2028헌바221 사건의 청구인은 민법 제98조가 생명이 있는 물건과 생명이 없는 물건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없어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물건에 관한 규정의 방식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별개 문제이며 당해 재판에서 법원은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 사건이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하였다. 이는 물건과 동물의 규정방식이 헌법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판단될 수 없었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본안에서 판단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은 입법형성권을 토대로 법률로서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평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설문조사에 나타난 시민사회의 변화된 인식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규범적으로 수용할 만한 요구가 될 것일까요? 입법을 추진하는 기관은 단지 합의에 지향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규정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는 물건이 아니므로 더 이상 물권의 객체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 특별한 보호가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법리를 수정하거나 대체하게 될 '보호'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에 미칠까요? 앞의 문제는 개정의 근저에 놓인 동물 철학과 연결되고 뒤의 문제는 준용의 범위와 관련됩니다.

Ⅱ 입법목적이 비물건화의 법리 구성과 준용 범위에 미치는 영향

첫째 질문부터 짚어가 보겠습니다.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을 뜻하며[3] 동물의 보호와 관련해 법적 표준이 될 「동물보호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민법」에 도입될 조항에서의 보호 역시 이러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보호는 보호받는 대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보호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때로는 두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개정의 추동력이 된 문제의식과 연결해 본다면, 인간과의 유사성이나 일정한 능력과 속성에서부터 시작한 동물보호는 그러한 속성이 약할수록 덜 보호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하지만 속성은 대상에 맞는 보호의 방식 문제이지 보호의 근거나 자격 문제로 연결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보편인권의 시대에 더 이상 신과 닮았다거나(imago dei) 백인-중산층-남성-비장애-이성애자라는 속성 또는 능력을 이유로 인권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어째서 동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변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문은 존엄과 인권의 문제에서 보편성이 인간-주체의 영역에 타당할 뿐이며, 동물-객체에까지 인정하는 '급진적' 태도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고 법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사고와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5] 이처럼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36203&searchKeywordTo=3)

4) 인간과 닮아서(스티븐 와이즈),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벤담 등 공리주의자), 쾌고감수능력에 따라 자기 삶을 영위해야 하므로(누스바움) 등을 동물과의 정의로운 관계의 근거로 삼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최근의 저술로는 마사 누스바움 (이영래 옮김), 『동물을 위한 정의』, 알레, 2023 참조. 한편, 이를 넘어선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으로는 예컨대,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참조.

인간-물건(동물), 주체-객체를 명확히 구분하며(이분법), 인간/주체에 우위를 두는(인간중심주의)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의 비물건화는, 인간과 동물 나아가 모든 비인간 자연/인공들과의 연결망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으며, 현실의 동물에 응답하며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 고민하지 못한 채, (낭만적 자연관에서부터 이해관계 사이의 어디쯤 놓인) 인간의 가치에 따라 재단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물건화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 동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선행 연구에서 비물건화 조항이 동물을 위한 것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살핀 연구는 최준규 교수님이 제시한 생태적 공서양속과 긴급피난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6]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동물철학 내지 동물정의론에 입각하여 문제를 설정했고 입법목적을 추구했느냐에 따라 구체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학대가 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령 정신적 스트레스는 '동물학대'의 개념정의에 명시되었음에도 구성요건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가 개정안 제98조의2와 결합한 생태적 공서양속을 원인인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인간과 유대관계가 덜하거나 고통을 느끼는지가 불분명한 동물이 전시와 놀이의 대상이 된다면 생태적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7] 다른 사례로 동물을 위한 긴급피난 역시 구체적 판단과정에서 이익형량에는 비물건화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동물의 이익에 비중을 두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사회와 동물 사이의 권력불균형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한다면, 보호에 대한 인간중심적 고찰의 한계는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

5) 하지만 자연과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많은 해외 사례가 존재함은 그러한 법적 태도라는 것이 결코 자명한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계속해서 정당화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나라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은 그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물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은 경청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해외 사례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사회적 및 법적 맹아가 발견되고 그것이 요구해 마땅한 것이라면, 충분히 추진해 마땅할 것이다.

6)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참조.

7)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법」에서조차 '동물' 개념에서 등급을 나누어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하거나 금지되는 동물학대의 예시조항을 (구)시행규칙에서 열거조항화 함으로써 명백한 학대 사례에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하거나 법원이 동물학대 처벌조항을 열거조항으로 읽어 무죄로 판단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환경법연구』 제44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22; "동물보호법상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법치국가", 『동물법연구』 제6권, 한국동물법연구회, 2024 참조.) 자의적 등급 나누기와 인간 편의적 법왜곡이 해석에 개입됨을 고려한다면, 사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법적 논의에서도 기존의 잘못된 접근을 직접 원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생태적 공서양속'이나 '긴급피난' 면책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동물을 배제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에 머무는 동물보호 논리는 언제든 균형을 잃고 인간에게만 편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혜적인 것이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논리는 일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동물에 응답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불완전한 세계관을 온전히 복구하려면, 동물을 물건으로 범주화하여 주체적 행위의 가능성을 박탈했던 세계관과 그 결과로서 동물학대 등을 반성함으로써 이제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와 대등하며 또한 연결된 세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과 닮아서, 어떤 속성이 있어서 또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동물이 그 자체 우리와 동등한 행위자이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법」 개정의 문제의식이자 목적성이어야 합니다. 물론 민법은 주체-객체 이분법 질서를 전제로 하여 주체로서 사인들 사이의 재산 및 가족에 대한 권리의 무관계를 다루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입법 형식상 '주체'들 사이의 이야기로 한정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은 법 도그마틱적으로는 문제될 것도 없고 당연히 여겨질 부분입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을 포함한 법적 논의는 때로 도그마틱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법실무와 법학이 구축한 견고한 체계 역시 정적이고 폐쇄된 형식논리의 체계가 아닌 동적이고 개방된 가치판단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8] 따라서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그 기초에 놓인 사유체계에 대한 반성을 「민법」에 담아내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역할은 기존의 법적 논리 체계를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합당한 가치판단을 추구하며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준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동물은 분명 인간 아닌 외계의 존재로서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법」 제98조가 규정하는 관리 가능한 '유체물'에 포섭됩니다. 따라서 동물은 비물건화 규정의 이해에 종속되는 모종의 '보호' 필요성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리고 유체물성에 부합하는 한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소유권 등 물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발제문에서처럼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적용되던 기존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풀이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자면, 일반적 소유권 법리에 따른 대우가 온전히 적용되는지 여부는 인간 사회에서 동물을 구분한 방식 중 '반려동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 전시, 오락, 식용, 사역 목적 등으로 인간이

8) Vgl. Calus-Wilhelm Canaris, *Systemdenken und Systembegriff in der Jurisprudenz*, 2. Aufl., Duncker&Humbolt, 1983, Rn. 50ff.

이용하는 동물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온전히 준용되어 일반적 소유권 법리가 온전히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현재의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친밀영역(가족법)과 비친밀영역(재산법)이 구분되듯 인간-동물 관계도 밀접성 정도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은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동물'의 범위가 다시 문제 될 거라고 봅니다. 선행 연구에서 비물건화 조항에 대해 이루어진 비판 중 하나는 '반려동물'에 적용될 문제를 모든 동물에까지 확장하여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 법률안에 대해 이분적 권리분류 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지적, 국회 전문위원이 물건성의 완전한 배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 문제와 일정 부분 관련됩니다.[9] 인간-동물 관계에서 문제의 본질은 동물이 그 나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채식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보호를 요구할수록 '그럼 동물을 먹어서도 안 되느냐'는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플럼우드의 견해에 따라,[10] 인간도 동물도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먹이이며 동시에 그 이상의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육식의 문제는 동물을 오직 음식으로서만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 지점입니다. 이때는 '육식' 그 자체를 비판할 때 발생하는 서구중심주의와 반-생태성을 벗어나서, 오늘날 산업화된 '공장식 축산' 등이 동물의 습성을 무시하고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문제로 삼게 됩니다. 다른 예로, 동물의 행동을 보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효율화'된 시설에 감금하여 전시하고 쇼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수반하는 싸움을 오락으로 포장하는 것은 각 동물의 습성과 삶의 방식을 무시한 것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례에서 동물은 대상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물건화를 통한 보호 필요성은 반려동물에 국한될 수 없고, 동물과 관계 맺는 모든 영역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방식의 축산업과 수산업, 전시나

9) 한편, 이분적 권리분류 체계의 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미 시체, 금제품처럼 물건성을 가짐에도 다른 취급이 인정되었던 '물건'이 있었고, 거래계의 필요가 있으면 지식재산,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권리가 인정되는 중이다. 헌법상 환경권과 그에 따른 객관적 헌법질서가 동물보호 역시 지향하며, 이로써 동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구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며, 「동물보호법」이 구체적 보호를 규정하는 법체계에서 「민법」이 그에 부합하게 변모하는 것이 과연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인지? 설령 일부 변화가 혼란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감내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최정호, "동물을 위한 정의와 법" (아세아여성법학회 발표문, 미간행), 2026. 5. 29. 참조.

10) 발 플럼우드 (김지은 옮김), 『악어의 눈. 포식자에서 먹이로의 전락』, 연두, 2023, 47쪽, 53쪽 등 참조.

오락 사업 등에 대해 생태적 공서양속을 문제삼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권리남용으로 보아 물권적 권능의 범위를 제한 또는 부정하거나, 그러한 처지에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긴급피난을 이유로 한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준용의 판단 기준인 '성질'은 단지 '유체물성' 여부가 아니라 '보호필요성'과 결합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준용은 단순히 기존 법리로 복구되는 창구가 아니라, 보호가 명시되지 않은 비친밀영역에서의 인간-동물 관계에도 보호 법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헌법」이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와 그것의 공법적 수용을[11]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서 법리적으로도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Ⅲ 유의미한 입법 추진을 위한 과제

토론자는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의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를 비롯하여 학계와 시민사회가 비물건화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단지 반려문화 확산에 따른 인식 변화라든가 동물이 우리와 닮은 속성을 가졌고 정서적 유대라는 인간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수준을 넘어선, 법적 연결망 속에 공존하면서도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자로 위치 지어져 배제되어 온 동물을 다시 존중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정부와 국회가 이 점을 분명히 해줘야 향후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공존의 질서를 민사법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11) 물론 헌법상 '환경' 개념에 포섭되는 동물은 종으로서의 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문제로 환원되곤 한다(환경법에서 동물). 반면 동물법에서 동물은 개체의 고통에 관심을 두었던 전통을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논의의 층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길에 있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법적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환경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과 환경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단순한 현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유기/무기체 등의 연결망에서의 동적 작용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동물 개체와 동물종 그리고 환경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도 이 점에 주목하여 '자연'의 권리 조항으로부터 동물 개체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소영, "동물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 -집계적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간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바탕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2호,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2025; 최정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동물보호",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214~218쪽; Andreas Gutmann, "Monkeys in Their Own Right: The Estrellita Judgement of the Ecuadorian Constitutional Court", VERFASSUNGSBLOG (Feb. 22, 2022), https://verfassungsblog.de/monkeys-in-their-own-right/

사실 개정안이 동물 자체의 존중을 위한 의미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는 그 문구에도 기존의 실정법 속에도 존재합니다. 우선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언은 존엄성의 소극적 표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정언명령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논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물건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12] 따라서 개정안의 법문은 칸트의 접근에 따를 때 동물을 목적적 존재로 대한다는 의미를 획득합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니다'에 상응하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헌법국가가 법률 차원에서나마 동물의 존엄성을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동물에게 '존엄'이라는 숭고한 어휘를 붙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생명의 존엄'이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하고 있습니다.[13] 존엄의 의미는 '인간다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자기다움'으로서 다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 연결망 속에서 인정되어 마땅한 인간다움 역시 더 이상 생태적 맥락을 배제한 것일 수 없습니다.[14]

나아가 동물에 대한 돌봄 책임을 본질로 하는 인간의 권리 또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친밀영역인 반려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비반려관계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 반려관계에서는, 마치 친권이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키고[15] 시체에 대한 소유권이 오로지 매장·제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처럼[16] 권리 객체를 지배하고 이용하

---

12)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158~161쪽 참조. "그러나 그 아래에서만 어떤 것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루는 것은 한낱 상대적 가치, 다시 말해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그러므로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이다."

13) 「동물보호법」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동물의 존엄성이 동물법의 이념이어야 한다는 지적은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 사회』 제60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346~349쪽. 참조. 또한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의 존엄이 명시되어 있다. (스위스 동물보호법) Art. 1 (Zweck) Zweck dieses Gesetzes ist es, die Würde und das Wohlergehen des Tieres zu schützen.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동물의 존엄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비물건화 조항은 칸트의 접근법을 따를 때, 원래 의도했던 바를 넘어서 동물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맹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칸트와 같은 인간중심적이고 이성중심적인 논리를 동물에게 확장하기 보다는, 비인간으로 확장된 공동체에서 인정관계에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자기다움의 인정을 통해 동물의 존엄을 근거짓는 것이 적절하다. 졸고, "탈인간중심적 존엄개념의 가능성", 『법철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24, 205쪽 이하; "기후·생태 헌법으로의 개정을 위한 현행헌법의 생태적 재해석 – 존엄성, 환경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제34권 제1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6, 42~43쪽 참조.

15)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120쪽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권'(이라고 일단 명명해 보겠습니다)을 도입하는 실익은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를 소유권 법리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 비물건화에 따른 법적 관계의 공백을 돌봄의 영역으로 분명히 규정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법리에서처럼 타인으로부터의 침해에 대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돌봄권자 스스로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박탈'을 「민법」의 차원에서 친권의 제한에 유사한 상황이라 해명할 수 있다는 점,[17] 반려동물 산업에서 매매를 금지하고 분양만 가능하게 하는 중간 다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유용합니다.

비친밀영역인 다른 관계들에서는 돌봄권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법리가 적용될 것이고, 앞서 언급했듯 이때에도 물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보호에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와 재산적 거래관계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목적적 존재를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와 같이 동물을 착취하는 방식의 민사상 효력은 비물건화 조항과 결합한 권리남용이나 공서양속의 문제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용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분명한 지침을 줄 수 있으려면 비친밀영역에서의 인간-동물 관계를 규율할 특별한 규정이 「민법」에 직접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22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중 송재봉의원안은 모든 동물 소유자·점유자의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합니다.[18] 그러한 의무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는 보호의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제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 등과 통합하여 '위원장대안'으로 고려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사실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중심 줄기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결론에서는 미래세대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현세대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어서, 어쩌면 기후-생태 위기 대응이나 소위 '환경보호'의 맥락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 생각과 만나는 지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물 비물건화는 물건처럼 취급해도 되는 일반 물건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분하는 전제에서 도입되는 규정입니

16) 곽윤직·김재형, 위의 책, 221쪽
17) 그밖에 「형법」 차원에서 보안처분의 법리 등도 있을 것이며 지금은 민사법의 문제로 한정해서 언급한다.
18) 법률안 제98조의2 ③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하지만 「민법」 상 물건 일반에 속하는 많은 것이 실은 생태적 또는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지금과는 다른 대우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 등 재산권은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 강하게 구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물보호가 일면에서나마 인간-동물 연결망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실은 인간-물건의 연결망 역시 현실의 요구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환경권을 소유권 법리로 축소했을지언정 생태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온 태도에 반영되어 있고, 법리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치 사공일가 TF의 접근법에서처럼) 유대관계에 있는, 다시 말해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준의 물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양한 비인간 자연/인공물은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을 구성하기까지 합니다. 인간만의 사회를 전제로 구축된 모든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사회적인 것'에 대해 다른 시각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고, 인문학과 여러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이런 입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인정의 연결망이 비인간과의 확장된 수준에서 파악되어 마땅하다는 현실의 이성이 제정법으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그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작은 한 걸음일 것입니다.

제3주제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제3주제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

|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퍼그 '에다']

I 민사집행법 개정의 배경

지난 2021년 2월 법무부에서 사공일가 TF(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발족하였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키워드 중 "유대"와 관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가 핵심으로 다루어졌고, 그 결과 2021년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조문과 유사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논의는 1인 가구의 "유대"라는 키워드와 부합하게, 전체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때의 금지대상으로 반려동물에 한정할 것인지, '유대'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왔다.

2026년 현재 민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역시 개정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논의 및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개별 쟁점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민사집행법 개정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1. 반려동물 압류와 관련한 실무

현재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 환가' 목적보다는, 채무자의 가장 취약한 감정을 공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변제 강제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무상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에 당도하여 동물을 압류할 때, 생명체의 특성상 압류 표지를 동물의 신체에 직접 부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이 거처하는 케이지나 전용 울타리에 부착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집행관실은 압류 물건을 직접 수거하여 보관소에 입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물의 경우 사료 급여, 배설물 처리, 돌발 질병 발생 등 관리 의무와 비용 문제로 인해 민사집행법 제199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현상 유지를 조건으로 그대로 보관하도록 위탁한다.

실제 경매 단계로 이행 시, 품종견이나 고가의 동물이 아닌 경우 감정평가액은 현저히 낮게 책정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반려견 2마리가

압류되어 각각 15만원과 10만원의 감정가를 매겨 처분했던 사례가 있다. 한편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채권자가 약 35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의 반려견 1마리를 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담당 집행관이 "노견으로서 환가 가치가 없다"며 압류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처럼 무익한 집행이 예견됨에도 오직 채무자 압박만을 위해 제도가 남용되는 실정이다.

2. 학계의 논의

기존 입법제안을 보면,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동물을 압류금지물건에 포함하는 견해(윤철홍, 2012),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고가의 반려동물의 경우 압류를 허용하는 견해(김상훈, 2016),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동물, 채무자의 생계에 필요한 가축을 모두 압류금지물건으로 보되, 고가의 경우에는 압류를 허용하는 견해(안소정/이계정, 2021) 등이 있다.

3. 국회의 의원 입법 동향

이와 관련된 국회의 의원입법동향은 아래와 같다.

○ 의안번호 제2107264호 (2021. 1. 8.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3[1]의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108390호 (2021. 2. 26.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3의 반려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108513호 (2021. 3. 4.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111403호 (2021. 7. 8.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채무자등이 등록한 등록대상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116351호 (2022. 7. 7.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장애인 보조견,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3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판매 목적 또는 영업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200348호 (2024. 6. 1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심사)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202708호 (2024. 8. 9.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심사)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의 반려동물” 신설

○ 의안번호 제2205926호 (2024. 11. 27.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심사)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의 반려동물 및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그 밖의 동물” 신설

1)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의원 입법안 요약]

순번	발의안	반려동물	영리목적이 없는 동물	채무자의 생계에 필요한 가축	예외적으로, 고가의 동물은 압류 허용
1	임종성의원(21대)	O	O	-	-
2	김도읍의원(21대)	O	-	-	-
3	정운천의원(21대)	O	-	-	-
4	한무경의원(21대)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동물 (= 개)			
5	신정훈의원(21대)	O	O	-	-
6	박희승의원(22대)	O	O	-	-
7	김도읍의원(22대)	O	-	-	-
8	김태년의원(22대)	O	△	-	-

※ 위 김태년의원(△)은 '영리목적이 없는 동물'이 아닌,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

4.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소유가 채무 면탈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대상 조문의 취지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한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2021년), 개정안이 동물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한정하는 등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024년) 및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2025년)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반려의 목적',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등의 법문표현이 추상적이고,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주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보호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며,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반려동물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유체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현행법 제196조에 따라서도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2021년) 및 더해 현행법에서 압류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요청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점, 압류금지규정의 신설은 절대적으로 압류금지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2024년, 2025년)

Ⅲ 해외 입법사례

동물의 압류금지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열거한 국가들은 반려동물 등 일정 범위의 동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는데, 고가의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독일, 스위스, 캐나다 통일법 표준안)가 있는 반면, 전면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국가(오스트리아, 프랑스, 이스라엘)가 있다.

<동물의 압류금지 관련 해외 입법례>[2)]

순번	구분	규정 내용
1	오스트리아	•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민법 제285a조)[3)] • 감정적 유대가 있는 가축으로서 양도 목적이 없는 가축은 그 가치가 750유로에 이르지 아니하면 압류할 수 없음(강제집행법 제250조제1항 제4호)[4)] → 2021년 법개정을 통해 가액제한 규정 삭제함
2	독일	•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 •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시 집행법원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765a조제1항)[5)] • 가정 내 영리목적없이 기르는 동물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가 동물의 보호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형량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압류를 허용(민사소송법 제811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2022년 법개정으로 조문 이동)[6)]
3	스위스	• 가정에서 재산 증식이나 영리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음. 다만 고가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음(강제집행법 제92조제1항제1a호·제3호)[7)]
4	프랑스	•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경비용 동물은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R.112-2조 제14호)[8)]
5	캐나다	• 채무자가 오직 반려동물로 기르는 가축의 경우 소정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없음[통일강제집행법 제159조 제1항 (i)][9)]. 개별 주에 따라, 금액 제한을 두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음
6	이스라엘	• 채무자의 가정이나 집 영역에 있고 상업적 성격의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동물인 반려동물은 압류되지 아니함[집행법 제22조(a)(6)][10)]

2) '김상훈, 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 2016'을 기초로 보완·수정

3) §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4) § 250. (1) Unpfändbar sind:
4. nicht zur Veräußerung bestimmte Haustiere, zu denen eine gefühlsmäßige Bindung besteht, sowie eine Milchkuh oder nach Wahl des Verpflichteten zwei Schweine, Ziegen oder Schafe, wenn

Ⅳ 개별 쟁점에 관한 논의

1.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물 관련 법제의 구성)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로 나누고 있고(제2조 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

diese Tiere für die Ernährung des Verpflichteten oder der mit ihm im gemeinsamen Haushalt lebenden Familienmitglieder erforderlich sind, ferner die Futter- und Streuvorräte auf vier Wochen;

5) § 765a Vollstreckungsschutz
(1) Auf Antrag des Schuldners kann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Maßnahme der Zwangsvollstreckung ganz oder teilweise aufheben, untersagen oder einstweilen einstellen, wenn die Maßnahme unter voller Würdigung des Schutzbedürfnisses des Gläubigers wegen ganz besonderer Umstände eine Härte bedeutet, die mit den guten Sitten nicht vereinbar ist. Es ist befugt, die in § 732 Abs. 2 bezeichneten Anordnungen zu erlassen.

6) § 811 Unpfändbare Sachen und Tiere
(1) Unpfändbar sind:
8. Tiere, die der Schuldner oder eine Person, mit der er in einem gemeinsamen Haushalt zusammenlebt,
a) nicht zur Ausübung einer Erwerbstätigkeit hält oder
b) für die Ausübung einer Erwerbstätigkeit oder eine damit in Zusammenhang stehende Aus- oder Fortbildung benötigt;

7) Art. 92
[1] Unpfändbar sind:
1. die dem Schuldner und seiner Familie zum persönlichen Gebrauch dienenden Gegenstände wie Kleider, Effekten, Hausgeräte, Möbel oder andere bewegliche Sachen, soweit sie unentbehrlich sind;
1a.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 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2. die religiösen Erbauungsbücher und Kultusgegenstände;
3. die Werkzeuge, Geräteschaften, Instrumente und Bücher, soweit sie für den Schuldner und seine Familie zur Ausübung des Berufes notwendig sind;

8) Article R112-2
Pour l'application du 5° de l'article L. 112-2, sont insaisissables comme étant nécessaires à la vie et au travail du débiteur saisi et de sa famille :
14° Les animaux d'appartement ou de garde ;

9) Section 159(1)
(i) domestic animals that are kept by the judgment debtor solely as pets [that are of a value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regulation];

10) Section 22: Movable Property Exempt from Attachment
(a) The following movable property shall not be attached:
[Pets]: Pets that are kept in the debtor's home and are not used for any business or commercial purpose;

"봉사동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6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6종의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7호),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동물(개)을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8호). 이를 통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6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물의 이용·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에 따르면 동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별법은, 동물을 동물 자체의 특성이 아닌 "인간의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서, 동물을 크게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및 실험동물로 나누고 동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즉, 동일한 개라는 개체가 인간의 이용목적에 따라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농장동물은 인간에게 음식으로 사용되므로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 따라 닭이 0.05㎡(A4 용지 2/3 크기)에 평생 서서 알만 낳다가 죽더라도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시동물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동물원은 합법적으로 코끼리나 돌고래를 평생 가두어놓고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야생생물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수렵꾼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가 목적이라면 야생 멧돼지들을 쏴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실험동물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절차만 준수하면, 실험실 등 연구기관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면서 적법하게 죽일 수 있다.

결국 이하에서 논의하게 될 개별 쟁점은, 금번 개정안이 ①동물 소유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물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의 객체인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규정하는 것인지, ②이용 목적에 따른 기존 동물 법제의 구분에 따라 "반려의 목적"을 중요시할 것인지, 아니면 객체가 되는 동물 자체의 특성을 중요시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반려의 목적이 없는 말 vs. 반려의 목적이 있는 개구리나 금붕어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을 더 보호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반려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현재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반려동물' 또는 '반려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압류금지물건을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동물보호법 상 반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별도로 없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해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인데,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지(스위스나 프랑스 입법례 참조),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하고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하는지, 주기적으로 산책을 시키는지, 개를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려의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반려의 목적이 없는 동물, 그중에서도 영리의 목적이 없는 동물은 보호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반려의 목적이 없는 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를 키우더라도 번식의 목적이나 경비의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호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즉, 본 개정안이, 제195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물건의 입법 취지와 같이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의 보전 등을 위한 것이라면,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이 동물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고 쾌고감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려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쾌고감수능력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압류금지범위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까지도 그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영리의 목적이 없는 동물은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37조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생각해보자.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개들을 압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반려동물만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한

다면,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받는 개들은 압류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동물' 역시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애린원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최대 규모의 사설 보호소였던 애린원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동물 학대 및 방치로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동물보호단체들이 9년여 간의 소송을 통해 원장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단행하여 유기견들을 구출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집행 비용을 납부한 후 유기견들을 압류·경매하는 절차(1마리당 5만 원)를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만약 민사집행법상 '영리 목적 없는 동물'이 압류금지물건으로만 규정된다면, 이처럼 학대받는 동물을 구출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우회적 구제 수단마저 차단되거나 제196조에 따른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실무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물론 이후 동물보호법 제37조의 신설로 사설보호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입법 시 이러한 실무적 악용 및 예외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4. 반려의 목적이 있는 다른 동물(말, 돼지, 파충류 등)은 보호대상인가?

반려의 목적이 있는 다른 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려의 목적으로 말이나 돼지를 기르는 사람,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 파충류를 기르는 사람도 있고,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도 있다. 이 모두 다 민법 개정안에 따라 물건이 아닌 동물이고,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에 해당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사견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하고 실제 실무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에 관련된 규정은 명확해야 하므로 압류금지물건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6종의 반려동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특히 말의 경우를 생각하면, 경주마 1두에 수천에서 수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채권회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다분하고, 실제 사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월 2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압류금지물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소유자와 동물 간의 유대감을 중요시한다는 점, 해외 입법례에서도 동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개의 경우에도 수천만 원을 상회하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종의 동물 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려의 목적이 있다면 정책적인 결단을 통해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금액의 제한이 필요한가?

현재 개정안에는 금액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금액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금액의 제한(750유로)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강제집행법을 개정하면서 금액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는 2019년에 있었던 독일 사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알렌 시는 반려견 세금을 체납한 가족의 퍼그 반려견 '에다'를 강제집행하였고(원 분양가 2,400유로), 시 공무원은 이 반려견을 ebay에 750유로에 올렸고, 690유로에 낙찰되어 세금을 회수했다. 그런데 '에다'를 인수한 낙찰자는 반려견의 눈 질환으로 병원비 약 1800유로를 지출하였고, 이는 (건강 상태에 대해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므로) 매도인인 알렌 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으로 인해, 알렌 시가 체납자의 반려견을 판 사실이 알려져서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까지 보도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에다는 법률 의견서를 가진 최초의 퍼그가 되었다. 독일에 바로 인접한 오스트리아 역시 이러한 이슈를 반영하여 2021년 법개정에서 금액 기준을 삭제하였다.

다만 여기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은, 위 '에다' 사례에서, 견주는 이미 7,000유로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2,400유로의 반려견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즉,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기피하고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반려견을 구입할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입법을 해야한다.

사견으로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히 금액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을 통해 압류금지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굳이 금번에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등록대상동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부 개정안에서는 압류금지물건으로 '등록대상동물'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에는 '등록대상동물'이라는 개념이 있다."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 이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는 개,

동물생산업자가 키우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 상 등록대상동물은 개에 한정되고, (조문을 자세히 보면) 반려의 목적이 없더라도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운다면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키우는 개는 반려의 목적이 있다면 등록대상동물이고, 반려의 목적이 없다면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다. 즉, 공장에서 경비 등의 목적으로 묶어서 키우는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다(물론 이는 반려동물도 아니다). 농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놓아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놓아서 기르는 개는 반려동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위에서 상술한 기준에 따르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반려의 목적이 어느정도 소명된다면 반려동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지정한다면, 농촌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개도 압류금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입법 및 집행 과정에서 이를 혼동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7. 민사집행법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현행 민사집행법 제188조는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제195조에서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의 보전, 직업유지, 공공복리 등 사회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고 있다(주석 민사집행법, 2024). 이 물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이나, 직업의 영위, 명예나 종교에 관련된 물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물건, 신체 보조기구, 재해의 방지나 보안에 관한 물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것으로, 기존 해석에 따르면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세탁기, 전기청소기는 하나뿐이더라도 압류금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제1호에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4호는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해서는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4호의 가축에 반려동물을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5호는 어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새끼고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축과 관련된 논의에 더해 현행법상 반려동물에는 어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호에 포섭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제14호는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조기구를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착용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신체보조기구로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1항[11]에서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들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가 아니라 국가의 장애인 지원을 규정한 제40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장애인 보조기구는 "생활용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견을 "생활용품"에 포섭시키기는 어렵고, 2022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이 "봉사동물"로 정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보조견을 단순히 "보조기구"로 볼 것이 아니라, 금번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본 호에 장애인 보조견을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타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도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아동복지법 제64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품(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1항), 신탁재산(신탁법 제22조 제1항),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등 개별법령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의 보전, 직업유지, 공공복리 등 사회정책적 측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압류금지는 채무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비물건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압류 금지를

11)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개별법령에서 압류를 금지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아닌,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한 민법 개정안의 정신을 구현하고, 1인 가구 시대에 인간과 동물의 정서적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의 개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입법 형태와 집행 실무의 영역에서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채무 면탈 방지라는 가치와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언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압류금지대상 동물의 명확화와 외연 확장

집행 실무의 안정성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삼되,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그 외 동물에도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및 절차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견(봉사동물)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4호에 명시적인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채무 면탈 가능성 배제

고가의 반려동물을 이용한 채무 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 제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보다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의 취소·허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

이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 동물의 가액 및 유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익형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집행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3. 바람직한 입법 형식의 선택

반려동물 압류금지가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유체동산 압류금지 취지와 완벽히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사법(私法) 전반에 확산시키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95조의 각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생명을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보고, 인간과 동물의 정서적 공존을 법제도 내로 포섭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금번 논의가 단순히 압류금지물건을 하나 줄이고 늘리는 기술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우리 법제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3주제 토론❶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에 대한 토론문

이무룡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토론❶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에 대한 토론문

| 이무룡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 들어가며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님께서 적정한 분량으로 요령있게 발표문을 작성해주시어 토론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최근 다견가정인 처가댁을 방문하여 다수의 반려견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다 온 바 있습니다(우측 사진은 그중 일부인 ‘몰리’와 ‘헤일리’ 母女 사이). 이러한 인상깊은 경험 하에 금번 토론을 맡게 되어 더 뜻깊습니다.

2. 체계상 조화와 정책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

발표문 전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계의 논의와 입법 동향, 법원 실무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반려동물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를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인데, 저는 체계상 조화와 정책적 기능 확보의 측면에서 한 가지씩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원입법들의 주류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반려동물 등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해당 조문의 취지가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최소한의 품위 보전, 직업유지, 공공복리 등 사회정책적 목표 달성에 있다는 점에서,[1] 채무자의 정서 보호와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압류금지는 별도의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소개해주신 법무부의 2021년 의견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의견에 따를 경우, 기술적으로는 제195조의2와 같은 형태로 가지번호를 활용한 신설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지향하는 목표 중 '공공복리 등 사회정책'을 폭넓게 이해하여, '동물의 보호', '인간과 동물의 공존' 등을 이 조문이 지향하는 공공복리 등 사회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킬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의원입법들의 주류적 태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없겠습니다. 물론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물건성이 제거되면, 앞서 말씀드린 가지번호 방식이 타당하겠습니다.

압류금지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즉 반려동물, 비영리사육 동물 등 어느 범주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 토론자로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본 부분은 한계가 아니라 일종의 코어(core)로서, 어떻게 규율범위를 설정하든 '등록대상동물'은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경우, 견주들(현행법령상 등록대상동물은 개에 한정되므로)에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신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등록조치를 취할 유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2] 등록대상동물의 압류금지 규정은 등록제도의 활성화라는 작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압류금지 예외 설정의 방법론

소개해주신대로 주요 국가들 중 상당수(독일, 스위스, 캐나다)가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례를 취하기에, 그러한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설정은 반려동물을 통한 채무 면탈을 방지하

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사법연수원, 2020, 22면에서는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 등 사회정책적 견지"를 언급합니다.

2) 최서윤, "동물등록 필요성 인식 중요…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해야", 뉴스1, 2026. 7. 3.(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6216450, 2026. 7. 4. 방문). 시간 관계상 추가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최신의 위 기사에 따르면 등록제 의무화 후 10년 가량 경과하였음에도 등록률은 42%에 그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자 하는 것인데, 반려동물은 설령 그것이 고가이더라도 일반적인 고가품들과 비교할 때 채무 면탈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이 고가품을 소유하여 채무 면탈 행위를 하는 것은 추후 해당 물건을 다시 현금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경우, 중고 거래의 양상을 고려할 때 다른 고가품들에 비해서는 그러한 재현금화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다면 이를 압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채무 면탈 행위를 방지한다는 기능이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은 다른 물건들에 비해 객관적 가치보다는 주관적(감정적) 가치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액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압류금지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요 국가들(오스트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처럼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아마도 드물게 인정될 예외적인 압류 필요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96조에 따라 법원 재판을 통해 해결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혀봅니다.

4. 제도의 지향점 : 사람을 위한 것인가, 동물을 위한 것인가

발표문에서도 적절히 문제를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압류금지 제도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제도의 설계 차원입니다. 거칠게 생각해보면 반려동물을 통한 채무자의 복리에 주목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을 '저질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채무자가 반려동물을 통한 복리를 향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압류금지의 범위는 축소되어야 합니다. 반면 동물의 복리,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으로 인해 애착관계를 형성한 주인과 강제로 분리되는 동물의 입장에 주목할 경우, 사태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근본적인 귀책성에도 불구하고 압류금지는 보다 정당화될 것입니다(동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제도의 운영 차원에서는, 집행의 현장에서 집행관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지거나, 민사집행법 제196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판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복리가 중심이라면 해당 반려동물과 분리됨에 따라 채무자의 삶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동물의 복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주인과 분리되었을 때 동물이 겪게 될 혼란과 스트레스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입법론과는 또 다른 문제로, 어느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함에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적어도 발표문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서는 - 명확한 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어느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과연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채무 면탈 수단으로서 반려동물의 한계와 함께, 사태에 대한 사람과 동물의 귀책성 유무 등을 고려할 때, 결과에 있어서는 압류금지 범위를 가급적 넓혀 동물 복리를 확보함이 타당하다는 쪽에 조금 더 기웁니다.

5. 보론 : 집행절차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로서 동물 인도 집행

발표 주제는, 그 자체로는 반려동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별도의 금전채권 실현을 위하여, 반려동물이 책임재산으로 파악되어 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동산강제집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제도 전반을 큰 틀에서 조망할 때, 반려동물 자체가 채권의 목적이 되고 그 채권의 실현이 집행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물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현행법을 전제로 할 때 이는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이 보편화됨에 따라 동물 자체가 계약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발표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기에 보론으로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펴볼 점은 반려동물 인도의무의 성격 및 그에 따른 집행방법의 선택입니다. 다른 물건의 인도의무와 동일하게 이를 '주는 채무'로 본다면 '직접강제'의 방법을 취하게 되어 반려동물을 직접 가져와 채권자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무난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앞서 압류에서 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 사안의 특수성, 특히 집행에 따른 분리로 인한 채무자와 반려동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를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채권자의 인수를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채무'로 분류할 여지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집행의 방법은 이행기간의 설정 및 그 위반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라는 '간접강제'의 형태가 됩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한 분류로는 주는 채무 가운데 직접강제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의사능력 있는 사람의 인도의무'가 그중 하나로 제시됩니다.[3] 유아(幼兒)의 인도청구 및 그 집행은 보다 구체적인 사안유형입

니다. 젖먹이 수준의 의사능력 없는 유아 인도청구는 집행관에게 인도(人道)를 염두에 둔 세심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제외하면 직접강제의 방법, 즉 일방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타방에게 아이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4] 반면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서, 즉 아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가 있고 스스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앞서 본 채권자의 인수를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간접강제 방식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5] 제가 여기서 유아 인도청구 및 그 집행을 떠올린 것은, 보더콜리 같은 견종은 지능이 3세~7세 아이의 수준에 이른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접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인도 집행에 대해서도 유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앞의 책, 753면.
4) 앞의 책, 686면.
5) 앞의 책, 686면.

제3주제 토론❷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에 대한 토론문

황성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3주제 토론❷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및 민사집행법 입법 방향 제언」에 대한 토론문

황성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Ⅰ 서 론

발제자께서는 반려동물 압류 문제를 둘러싼 실무적 현황, 국내 입법 논의의 경과, 해외 입법례, 그리고 개별 쟁점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논의를 소개하셨습니다. 특히,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채권 회수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입법 취지를 '채무자 보호'에 둘 것인지 '동물 자체의 보호'에 둘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핵심 구도 설정은 많은 통찰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발제문의 논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아래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Ⅱ 발제문에 대한 토론

1. 별도 조문 신설의 타당성

발제자께서는 반려동물 압류금지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각호에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셨는데, 이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1)]

는 채무자의 최저한의 생활보장 등 채무자 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문으로서,[2] 개정안의 반려동물 압류금지는 '채무자의 정서적 보호'와 '동물의 비물건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제목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상황에서 위 조문에 규정하는 방식은 정합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기준의 명확성 문제

제22대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의견을 표하면서 논거 중 하나로 "집행현장에서 반려동물인지 영리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에서도 동물보호법상 반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별도로 없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해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집행현장에서 '반려동물'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발제자께 여쭙고 싶습니다.

3. 「동물보호법」 상 6종 한정 관련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6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이러한 6개의 종에 한정하는 것은 행정적 분류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사람과 동물 간의 유대감을 중요시한다는 점, 해외 입법례에서도 동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

1)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 16. (생 략)

2) 주석 민사집행법(편집대표 :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11.(제5판)

앵무새, 파충류, 금붕어 등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현실에서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6종의 동물 이외의 경우라도 반려의 목적이 있다면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법형식은 강제집행 관련 규정은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종류를 하위법령에 규정한 「동물보호법」과 같이 압류금지 대상 종(種)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발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고가 동물에 대한 예외적 압류 허용 관련

발제자께서는 고가 반려동물에 대한 채무 면탈 가능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별도의 금액 제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196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9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고가 반려동물의 압류를 신청하면서 제19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범위축소 신청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압류금지 규정만을 근거로 압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의 보호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형량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를 압류금지물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여 '압류금지물의 범위에 해당함'을 채무자의 신청을 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5. 장애인 보조견의 취급

발제자께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민사집행법」 제195조 각호에 명시적으로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압류금지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로 규정되는데, 「민법」이 개정되어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지 않게된다면, 이를 조문제목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인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아닌 신설하게될 해당 조문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Ⅲ 결 론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논의는 반려동물 압류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쟁점을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입법취지에 따른 입법안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 점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입법에 정교하게 구현되어, 바람직한 입법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